#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202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 목 차 ]


**제1장.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 ····· 2**

1. 조사배경 ····· 2
2. 조사개요 ····· 2

**제 2 장 조사 설계 ····· 4**

1. 표본설계 ····· 4
2. 표본 구성 ····· 9
3. 가중치 산출 ····· 20

**제 3 장 실사 진행 과정 ····· 38**

1. 실사 준비 과정 ····· 38
2. 실사 진행 과정 ····· 40
3.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46

**제 4 장 재정패널 표본 특성 ····· 50**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50
2.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 52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54

**제 5 장 가구 조사표조사결과 요약 ····· 56**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 56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 60

**제 6 장 가구원 조사표조사결과 요약 ····· 67**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 67
2.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73

# 제1장. 재정패널 조사의 개요

## 1. 조사배경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으로 인해 세금제도 개편 시 정책효과의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자료는 연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구 단위의 조세-지출-복지에 관한 포괄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정책의 역할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정패널 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즉, 가계의 조세부담 및 가계가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공평성 및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지출의 불합리성과 국민의 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지난 2008년 첫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까지 매년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 2020년도 13차 조사에서는 기존 패널에 더해 신규 패널을 추가로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 2. 조사개요

### 1) 조사대상

2020년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에 구축된 전국(제주도 제외) 5,014가구와 2009년에 탈락한 가구를 추가해서 추출한 추가가구 620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 원가구의 가구원이 결혼, 취업 등의 사유로 분가하였을 경우 분가한 가구원을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활동과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조사표의 구성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조사표와 가구원(개인) 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현황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상태, 연간 소득이나 소득세 납부액, 소득신고 현황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3) 실사 수행기관

2020년 1~2월 중에 현장 조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다. 입찰 결과 사회조사전문기관인 입소스 주식회사가 재정패널 조사의 실사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 4) 조사기간 및 조사 기준시점

2020년 재정패널 조사는 2020년 6월~2021년 1월 사이에 진행됐다. 조사표에서 측정하는 기준시점은 2019년이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을 측정하는 질문은 2019년 1월~12월간의 1년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저량(stock)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단, 가구원 조사표의 경제활동 상태는 조사 시작 시점인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5) 조사방법

재정패널 조사는 조사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조사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기본으로 했다. 그러나 응답자가 심야에 귀가해 만나기가 어렵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 응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 조사 방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조사 도구는 이전 차수와 동일하게 종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6) 조사일정

2020년 재정패널 조사의 현장 실사는 기존 패널은 6월에, 신규 패널은 7월에 착수하였다. 다만, 실사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던 8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 조사에서 응답자와 면접원 간의 접촉에서 위험성이 있고, 응답자가 조사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중단하였다. 일정이 순연되어 2021년 1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 제 2 장 조사 설계

## 1.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기본적으로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의 목표유효표본 크기는 1차년도에 구축된 최초가구 5,014개와 2차년도에 추가로 추출한 추가표본 가구 620개 가구, 그리고 이 가구들에서 2차년도~12차년도에 가구원 중 일부가 분가하여 형성한 분가가구 851개 가구이다. 단 12차년도까지 사망 또는 해외 거주 및 더이상 조사가 어렵다고 확인된 261가구 및 분가 표본에서 소멸된 41가구(사망 또는 해외거주 8가구, 원가구/분가가구 합가/원가구원 없음 33가구)는 추적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차 조사에서는 여기에 더해 신규 가구 4,000개 이상을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 2) 모집단

재정패널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가구와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의 개념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6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재정패널 조사의 원표본 가구(최초표본가구와 추가표본가구)를 추출하기 위한 모집단 자료(sampling frame)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중 통계청에서 외부 통계작성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90%의 자료이다.

### 3) 표본설계 개요

재정패널 조사는 2008년도에 추출된 전국 5,014가구와 2009년에 추가로 조사된 추가가구 620가구를 원표본으로 정의하여 추적 조사한다. 덧붙여, 횡단면 분석을 위해 표본가구에서 분가한 분가가구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표본의 마모에 따른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횡단면 분석이 가능한 신규 표본 4,000가구를 구축하고자 하여, 총 4,030 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2021년 현재 진행중인 14차년도의 경우 종단면 분석이 가능한 신규 원표본 가구 4,000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사를 진행 중에 있다.

(1) 1차년도 최초표본 설계

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축아파트 입주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설계했다. 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한 조사구를 1차 추출단위로 하는데, 이때 조사구는 전수조사구 90%를 활용했다. 그리고 추출된 조사구에서의 일정 수의 가구를 2차적으로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는 2005년 조사 당시에 없었던 지역으로 센서스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05년 11월 이후 입주아파트를 우선 60~80가구 정도씩 묶어 일종의 가상적인 조사구를 구성하고, 해당 지역의 가구추출률과 비슷한 추출률이 유지되도록 표본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추출했다. 또한 재정패널 조사의 목적을 감안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실제 분포보다 많이 표집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을 선정했고, 이 지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과대표집(over sampling)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조사구에서 추출하는 가구수는 5개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와 과대표집 조사구도 역시 한 개의 조사구에서 다섯 가구를 추출했다. 그러므로 가구표본 5,010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표본 조사구 수는 1,002개로 설계했다. 1차년도 현장 조사 결과, 한 조사구 내에서 5가구가 아닌 4가구나 6가구가 추출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해 총 1,002개의 조사구에서 5,014개 가구가 표집됐다.

(2) 2차년도 추가표본 추출

2차년도 조사 진행 과정에서 최초표본 가구가 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몇 차례 방문을 해도 가구원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진행이 불가능했다. 기존의 패널조사는 종단적 분석이 중요한 연구목적이므로 기존 표본에 대한 추적조사에만 집중해 왔으며, 원표본의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표본규모 증가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패널 조사의 주 연구 주제인 가구의 조세 • 재정 정보는 관련 법 • 제도의 변화에 따라 연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세 납부 유형별로 유의미한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2차년도에 탈락된 원표본 가구 크기만큼 추가로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추가표본의 추출 방식은 확률추출법에 의거한다. 탈락한 최초표본(n)이 속해 있던 조사구 내에서 가구리스트 정렬 순서상 n+1 → n-1 순서로 체계적인 추출을 실시했다. 이러한 방식은 1차년도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추출했던 방식과 동일하며, 랜덤화의 원리를 이용함으로써 탈락된 표본과 여러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8년과 2009년에 추출된 원표본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원표본 가구 구성

(단위: 가구)

| 표집틀 |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 | | | 신축아파트조사구 | | 합계 |
|---|---|---|---|---|---|---|---|
| 지역특성 | 동부 | | 읍면부 | | 동부 | 읍면부 | |
| 조사구 형태 | 일반 | 아파트 | 일반 | 아파트 | 아파트 | 아파트 | |
| 전국 | 2,402 | 2,013 | 657 | 193 | 323 | 46 | 5,634 |
| 서울 | 658 | 507 | - | - | 115 | - | 1,280 |
| 부산 | 253 | 143 | 10 | - | 23 | - | 429 |
| 대구 | 165 | 102 | 12 | 11 | 19 | 5 | 314 |
| 인천 | 134 | 123 | 12 | - | 17 | - | 286 |
| 광주 | 103 | 86 | - | - | 10 | - | 199 |
| 대전 | 110 | 81 | - | - | 10 | - | 201 |
| 울산 | 62 | 60 | 10 | 11 | 10 | - | 153 |
| 경기 | 382 | 413 | 83 | 51 | 54 | 18 | 1001 |
| 강원 | 65 | 62 | 37 | 11 | 10 | - | 185 |
| 충북 | 64 | 69 | 42 | 12 | 6 | 7 | 200 |
| 충남 | 53 | 55 | 76 | 20 | 12 | 5 | 221 |
| 전북 | 92 | 81 | 78 | 10 | 12 | - | 273 |
| 전남 | 68 | 58 | 116 | 10 | 10 | - | 262 |
| 경북 | 89 | 78 | 113 | 24 | 5 | 5 | 314 |
| 경남 | 104 | 95 | 68 | 33 | 10 | 6 | 316 |

* 원표본 가구 = 최초표본 가구 + 추가표본 가구

(3) 분가가구 추적 조사

2008년에 표집된 최초가구(5,014가구)나 2009년에 표집된 추가가구(620가구)에 속해 있던 가구원이 결혼이나 경제적 이유로 분가해 나갔을 경우에는 분가한 가구원을 추적하여, 해당 가구에서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가 가구는 횡단면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군입대나 해외거주, 가출, 병원 요양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신규 가구를 생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적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대졸자 이하의 자녀가 학업 목적으로 분가했을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 가구에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분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 4) 13차년도 횡단표본 설계

(1) 13차년도 횡단표본 조사 설계 배경

2008년에 구성된 재정패널 표본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구성되었고, 이후 2019년까지 패널 마모(panel attrition)가 누적되어 발생함으로 종단면 분석의 경우에는 표본 수 감소로 인하여 분석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횡단면 분석의 경우에는 표본의 대표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외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패널 추가 혹은 새로운 코호트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고려된다. 특별히,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조사 시점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을 추가하여 횡단면 분석을 시행하고, 기존 패널과 일정 규모 이상의 추가된 표본으로만 구성된 신규 패널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이 다른 장기 패널조사 연구에서 진행되고 있다.

(2) 13차년도 횡단표본 추출

13차년도에 신규로 추출하고자 한 목표가구수는 총 4,000가구이다. 이는 기존 원표본의 이탈 패턴 분석 및 이탈 가구 특성 등을 고려[1]하여 모집단 대표성 확보를 위해 산출된 가구수 이다.

신규 패널의 표집틀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와 2018년 이후 신축아파트 조사구이며, 시도, 동부/읍면부, 조사구 유형(일반/아파트)의 다단계 층화 후 집락계통 추출법을 활용해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신규 표본 추출 당시 당초 전국(제주도 제외)에서 800개 조사구를 추출해 4,000개 가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표본설계 과정에서 신축아파트 표본 조사구 규모가 당초 20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신규패널 조사를 위해 전국에서 805개 조사구를 추출하였고 이 중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780개, 신축아파트 조사구가 25개를 차지한다.

13차년도 횡단표본은 1차년도 원표본 설계와 동일하게 조사구 추출 단계에서 조세 부담이 큰 고소득층과 복지수혜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 집단을 과대표집하여 표본을 구성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고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2]과 저소득층 밀집 주거 지역[3]을 각각 50개 조사구씩 추가로 추출하였다.

표본 가구 추출을 위해서 조사구 내 가구 리스트에서 일정한 간격(k)에 해당하는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였다. 1개 조사구 내에서는 5개 가구를 추출하였고, 조사거절, 장기간 부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 가구를 대체하여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총 60가구가 있는 조사구라면, 조사구 내 가구 추출 간격 k는 12(60÷5=12)이다. 최초 추출한 k번째 가구에 대한 조사가 실패할 경우,

1) 13차년도 횡단표본 추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박민규 교수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2) 행정안전부 201912월 자료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여 상위 행정동을 선정한 후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해당 행정동 조사구 중 50개 조사구를 임의 추출
3) 국세청 자료에서 행정동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를 산출한 후 이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자료와 병합하여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 비율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은 상위 행정동 내 조사구 중 50개 조사구를 임의 추출

k+1, k+2 순서로 표본 가구를 대체했다. 이와 같은 설계에 따라 13차 신규 가구 목표표본수는 4,025개 가구 이상으로 결정되었고, 현장조사 결과 총 4,030가구의 조사에 성공하여 13차년도 횡단표본으로 구성되었다.

(3) 14차년도 신규 원표본 추출 예정

13차년도 조사시점인 2020년 초부터 발현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규 횡단표본 구축 시 조사기간 변동 및 조사거절에 따른 대체 조사구 추출 확대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렇게 추출한 가구를 계속 추적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13차년도 구축 횡단표본은 추적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횡단면 분석에만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4차년도 조사시 계속 추적하여 조사하는 원표본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설계하였고, 2021년 현재 14차년도 신규 원표본 가구의 조사가 진행되어 약 4,000가구 이상의 신규 원표본이 새롭게 구축될 예정이다.

## 2. 표본 구성

### 1) 기존 패널가구 구성

13차년도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4,809가구가 표집 되었다. 2020년도 표본가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2] 13차년도 조사성공 표본구성

(단위: 가구)

| 시도 (13차년도 거주 지역 기준) | 최초 표본가구 | 추가 표본가구 | 2-12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 2019년 6월 이전 분가가구 | 201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 총합계 |
|---|---|---|---|---|---|---|
| 전국 | 3,524 | 481 | 722 | 35 | 47 | 4,809 |
| 서울 | 553 | 131 | 135 | 8 | 7 | 834 |
| 부산 | 275 | 41 | 59 | 3 | 3 | 381 |
| 대구 | 214 | 27 | 43 | 0 | 3 | 287 |
| 인천 | 160 | 21 | 29 | 4 | 3 | 217 |
| 광주 | 131 | 12 | 45 | 1 | 3 | 192 |
| 대전 | 151 | 24 | 28 | 3 | 1 | 207 |
| 울산 | 99 | 5 | 21 | 0 | 1 | 126 |
| 경기 | 653 | 113 | 121 | 6 | 10 | 903 |
| 강원 | 137 | 5 | 16 | 2 | 1 | 161 |
| 충북 | 124 | 23 | 14 | 3 | 1 | 165 |
| 충남 | 157 | 13 | 25 | 3 | 2 | 200 |
| 전북 | 179 | 15 | 37 | 0 | 2 | 233 |
| 전남 | 210 | 6 | 39 | 0 | 3 | 258 |
| 경북 | 221 | 16 | 41 | 2 | 3 | 283 |
| 경남 | 244 | 25 | 60 | 0 | 2 | 331 |
| 제주 | 2 | 1 | 1 | 0 | 1 | 5 |
| 세종 | 14 | 3 | 8 | 0 | 1 | 26 |

* 2019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21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 표본으로 인정됨.

### 2) 원표본 가구 유지율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원 패널가구 중 2020년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005가구로 패널 유지율은 71.1%이다. 소득과 자산, 세금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점과 수도권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할당된 표본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비교적 양호한 유지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패널 유지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81.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62.9%로 가장 낮았다. 지방의 탈락률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탈락률이 좀 더 높은 현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표 3] 원표본가구 유지율 A : 분모에 사망과 해외거주 포함

(단위: 가구)

| 시도 | 원표본<br>지역별 가구수 | 2020년도<br>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 원표본가구 유지율* |
|---|---|---|---|
| 전국 | 5,634 | 4,005 | 71.1 |
| 서울 | 1,280 | 815 | 63.7 |
| 부산 | 429 | 315 | 73.4 |
| 대구 | 314 | 235 | 74.8 |
| 인천 | 286 | 180 | 62.9 |
| 광주 | 199 | 150 | 75.4 |
| 대전 | 201 | 158 | 78.6 |
| 울산 | 153 | 111 | 72.5 |
| 경기 | 1001 | 669 | 66.8 |
| 강원 | 185 | 146 | 78.9 |
| 충북 | 200 | 152 | 76.0 |
| 충남 | 221 | 173 | 78.3 |
| 전북 | 273 | 196 | 71.8 |
| 전남 | 262 | 208 | 79.4 |
| 경북 | 314 | 239 | 76.1 |
| 경남 | 316 | 258 | 81.6 |

*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는 최초표본 가구수+추가표본 가구수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할 때에는 '사망'과 '해외거주'와 같은 케이스는 가구가 소멸된 것이므로 분모에서 제외한다. 13차년도를 기준으로 사망 가구는 163가구를 넘어섰고, 해외거주 가구는 64가구로 집계되었다. 사망이나 해외거주 등 조사 불가한 가구가 227가구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가 계속되어 유지율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패널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패널 유지율을 계산하도록 한다.

[표 4] 패널유지율 계산방법

(단위: 가구)

| 구분 | 계산법 | 실제 계산에 적용되는 분모수 |
|---|---|---|
| 패널유지율(A)<br>기존 유지율 계산법 | 1,2차년도 표집된 원가구(최초+추가) 전체를 분모로 함 | 5,634 |
| 패널유지율(B)<br>통상적인 유지율 계산법 | 원가구 중 소멸가구(해외거주와 사망 등)를 분모에서 제외 | 5,337 |

12차년도에 이어 13차년도 연속 해외거주로 파악된 원표본 61가구, 가구원 전체가 사망으로 확인된 가구가 158가구로 총 219가구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일부 가구는 거듭된 추적실패로 인해 실제로는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파악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조사원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전임 조사원이 해외에 거주했다고 파악한 가구를 자신이 연락했을 때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추적실패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재정패널 조사에서 컨택 결과가 추적실패로 해마다 엇갈렸던 가구들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고 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장기간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정된 11 가구를 소멸하였다. 이 소멸 가구들은 다년간 추적실패이면서 1944년생이상 1인 단독 거주가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원표본 5,634가구 중 패널유지율(B) 계산을 위한 분모는 소멸된 원표본 297가구를 제외한 5,337가구이다. 이를 기준으로 패널유지율을 계산해보면 전국 기준으로 75.0%로 집계된다.

[표 5] 원표본가구 유지율 B : 분모에서 사망과 해외거주 제외

(단위: 가구)

| 시도 | 원표본<br>지역별 가구수 | 2020년도<br>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 원표본가구 유지율* |
|---|---|---|---|
| 전국 | 5,337 | 4,005 | 75.0 |
| 서울 | 1,226 | 815 | 66.5 |
| 부산 | 403 | 315 | 78.2 |
| 대구 | 305 | 235 | 77.0 |
| 인천 | 269 | 180 | 66.9 |
| 광주 | 185 | 150 | 81.1 |
| 대전 | 188 | 158 | 84.0 |
| 울산 | 148 | 111 | 75.0 |
| 경기 | 958 | 669 | 69.8 |
| 강원 | 177 | 146 | 82.5 |
| 충북 | 181 | 152 | 84.0 |

| 시도 | 원표본<br>지역별 가구수 | 2020년도<br>추적조사 성공 표본수** | 원표본가구 유지율* |
|---|---|---|---|
| 충남 | 212 | 173 | 81.6 |
| 전북 | 248 | 196 | 79.0 |
| 전남 | 242 | 208 | 86.0 |
| 경북 | 293 | 239 | 81.6 |
| 경남 | 302 | 258 | 85.4 |

* 원표본 유지율은 2008년, 2009년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 추적조사 성공 표본수는 최초표본 가구수+추가표본 가구수임.

재정패널 조사의 13차년도 패널유지율(A) 71.1%는 국내외 유수 패널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 패널조사로 불리는 노동패널 13차년도 조사 유지율(72.1%)과 비슷한 수준이고, 복지패널의 유지율(60.3%)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국내외 주요 패널조사 패널유지율 비교

(단위: %, 연도)

| 구분 | 재정패널 | 노동패널 | 복지패널 | 미국PSID | 독일GSEP | 영국BHPS |
|---|---|---|---|---|---|---|
| 2차년도 | 89.0(2009) | 87.6(1999) | 92.1(2007) | 89.0(1969) | 89.9(1985) | 87.7(1992) |
| 3차년도 | 84.3(2010) | 80.9(2000) | 86.7(2008) | 86.3(1970) | 86.0(1986) | 81.5(1993) |
| 4차년도 | 81.9(2011) | 77.3(2001) | 83.9(2009) | 83.7(1972) | 84.9(1987) | 79.9(1994) |
| 5차년도 | 79.9(2012) | 76.0(2002) | 80.3(2010) | 82.5(1972) | 81.3(1988) | 76.8(1995) |
| 6차년도 | 79.0(2013) | 77.2(2003) | 75.4(2011) | 81.2(1973) | 79.2(1989) | 77.3(1996) |
| 7차년도 | 78.6(2014) | 77.3(2004) | 74.5(2012) | 79.6(1974) | 78.4(1990) | 76.0(1997) |
| 8차년도 | 77.8(2015) | 76.4(2005) | 72.1(2013) | 78.3(1975) | 78.9(1991) | 74.1(1998) |
| 9차년도 | 76.8(2016) | 76.4(2006) | 69.2(2014) | 76.8(1976) | 78.4(1992) | 72.1(1999) |
| 10차년도 | 75.2(2017) | 75.5(2007) | 67.3(2015) | 75.2(1977) | 78.8(1993) | 70.4(2000) |
| 11차년도 | 73.8(2018) | 74.2(2008) | 64.5(2016) | 74.0(1978) | 77.7(1994) | 68.4(2001) |
| 12차년도 | 72.6(2019) | 73.1(2009) | 62.2(2017) | 72.6(1979) | 76.1(1995) | 66.6(2002) |
| 13차년도 | 71.1(2020) | 72.1(2010) | 60.3(2018) | 71.2(1980) | 75.1(1996) | 64.9(2003) |

* 노동패널과 복지패널의 유지율은 계산법A를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해외 사례는 노동패널 13차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재인용했으나 산출 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음
* PSID : Panel Study Income Dynamics
* GSEP : German Socio-Economic Panel
* BHPS : 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 3) 분가표본 가구 유지율

2008년~2019년 원가구에 속해있던 가구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가하여 나간 분가가구 중 추적해야 할 분가가구는 851가구로 확인됐다. 그 중 50가구가 사망, 해외 거주, 원가구 합가 등으로 소멸됐고, 최종적으로 13차년도 조사에서는 722개의 분가가구가 조사에 성공했다. 소멸을 분모에서 제외한 분가가구 유지율은 90.1%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시도별 분가가구 유지율 현황 : 분모에서 소멸가구 제외

(단위: 가구, %)

| 시도* | 추적해야 하는 분가가구 | | 2020년 조사성공 | 분가가구 유지율 | |
|---|---|---|---|---|---|
| | 소멸 포함 가구수 | 소멸 제외 가구수 | | 유지율A(%) | 유지율B(%) |
| 전국 | 851 | 801 | 722 | 84.8 | 90.1 |
| 서울 | 170 | 165 | 148 | 87.1 | 89.7 |
| 부산 | 66 | 64 | 59 | 89.4 | 92.2 |
| 대구 | 42 | 39 | 36 | 85.7 | 92.3 |
| 인천 | 38 | 36 | 32 | 84.2 | 88.9 |
| 광주 | 52 | 49 | 44 | 84.6 | 89.8 |
| 대전 | 31 | 29 | 28 | 90.3 | 96.6 |
| 울산 | 28 | 26 | 26 | 92.9 | 100.0 |
| 경기 | 123 | 111 | 96 | 78.0 | 86.5 |
| 강원 | 33 | 29 | 23 | 69.7 | 79.3 |
| 충북 | 20 | 19 | 16 | 80.0 | 84.2 |
| 충남 | 32 | 32 | 29 | 90.6 | 90.6 |
| 전북 | 57 | 51 | 46 | 80.7 | 90.2 |
| 전남 | 40 | 38 | 35 | 87.5 | 92.1 |
| 경북 | 52 | 48 | 42 | 80.8 | 87.5 |
| 경남 | 66 | 64 | 61 | 92.4 | 95.3 |
| 세종 | 1 | 1 | 1 | 100.0 | 100.0 |

* 분가가구 시도 구분은 최초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했음

### 4) 기존 패널가구 탈락 현황

#### (1) 원표본 가구 중 탈락·소멸 가구

13차년도 조사 참여를 거부한 원표본 가구 1,332가구를 사유별로 보면, 강력거절로 인한 탈락이 699가구로 전체의 5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추적실패는 614가구로 46.1%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사망과 2년 연속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소멸된 가구는 모두 297가구로 집계됐다. 1·2차년도 최초 조사 당시의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탈락 및 소멸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시도별 원표본가구 탈락 및 소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시도 | 탈락 가구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 거절 | 추적 실패 | 병원 입원 | 해외 거주 | 소계 | 사망 | 해외 거주 | 조사 불가 (병원/ 기타) | 추적실 패 | 소계 |
| 전국 | 699 | 614 | 16 | 3 | 1,332 | 158 | 61 | 32 | 46 | 297 |
| 서울 | 211 | 198 | 2 | 0 | 411 | 16 | 19 | 6 | 13 | 54 |
| 부산 | 50 | 36 | 2 | 0 | 88 | 18 | 4 | 1 | 3 | 26 |
| 대구 | 26 | 41 | 2 | 1 | 70 | 7 | 1 | 0 | 1 | 9 |
| 인천 | 46 | 40 | 3 | 0 | 89 | 6 | 1 | 2 | 8 | 17 |
| 광주 | 23 | 10 | 2 | 0 | 35 | 11 | 0 | 0 | 3 | 14 |
| 대전 | 12 | 18 | 0 | 0 | 30 | 6 | 5 | 2 | 0 | 13 |
| 울산 | 17 | 20 | 0 | 0 | 37 | 1 | 2 | 1 | 1 | 5 |
| 경기 | 161 | 124 | 2 | 2 | 289 | 16 | 14 | 3 | 10 | 43 |
| 강원 | 16 | 15 | 0 | 0 | 31 | 6 | 1 | 0 | 1 | 8 |
| 충북 | 19 | 10 | 0 | 0 | 29 | 9 | 6 | 3 | 1 | 19 |
| 충남 | 23 | 16 | 0 | 0 | 39 | 7 | 1 | 1 | 0 | 9 |
| 전북 | 29 | 23 | 0 | 0 | 52 | 21 | 0 | 4 | 0 | 25 |
| 전남 | 16 | 17 | 1 | 0 | 34 | 13 | 2 | 4 | 1 | 20 |
| 경북 | 20 | 32 | 2 | 0 | 54 | 11 | 5 | 3 | 2 | 21 |
| 경남 | 30 | 14 | 0 | 0 | 44 | 10 | 0 | 2 | 2 | 14 |

원표본을 최초가구와 추가가구로 나눠 탈락 유형을 살펴보면 최초가구에서는 강력거절이 가장 큰 탈락 사유인 반면, 추가가구에서는 추적실패가 조금 더 많았다.

[표 9] 최초가구·추가가구 중 탈락·소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유형 | 탈락 가구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 거절 | 추적 실패 | 병원 입원 | 해외 거주 | 소계 | 사망 | 해외 거주 | 조사 불가 | 추적 실패 | 소계 |
| 최초가구 | 642 | 553 | 14 | 3 | 1,212 | 149 | 54 | 30 | 45 | 278 |
| 추가가구 | 57 | 61 | 2 | 0 | 120 | 9 | 7 | 2 | 1 | 19 |

(2) 분가표본 가구 중 탈락·소멸 가구

분가가구 탈락 사유는 강력 거절이 58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추적실패가 18가구였다. 다시 원가구 또는 분가가구에 합가하거나 원가구원이 남아 있지 않아 소멸된 원가구 합가 가구가 41가구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10] 분가가구 중 탈락·소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유형 | 탈락 가구 | | | | | 소멸가구 | | | | |
|---|---|---|---|---|---|---|---|---|---|---|
| | 강력 거절 | 추적 실패 | 병원 입원 | 해외 거주 | 소계 | 사망 | 해외 거주 | 원가구합가/원가구 원없음 | 분가가구 합가* | 소계 |
| 분가가구 | 58 | 18 | 1 | 2 | 79 | 5 | 3 | 41 | 1 | 50 |

* 분가가구 합가가구는 기존의 분가가구에서 한 번 더 분가했던 원가구원이 다시 원래 있었던 분가가구로 합가하여 소멸된 가구를 의미함

## 5) 신규 분가가구 현황

13차년도 조사시점까지 발생한 분가가구 801가구 중 722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했으며 13차년도 조사 결과 총 82가구의 신규분가 가구가 더 추가되었다. 이 중 2019년 6월 이전에 분가한 가구는 이미 분가 가구원이 새로운 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의 지난 해 경제상황을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조사표도 함께 조

사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35가구이며, 이 가구는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결과 분석 과정에 포함시켰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분가하여 형성된 가구는 분가 가구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원가구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한 것이 되므로 이 가구원의 경제상황은 원가구에서 조사하게 된다. 다만, 14차년도부터는 이 분가가구 또한 6개월 이상 함께 동거한 가구원으로 구성되므로, 14차년도 조사를 위해 분가가구를 찾아가 가구원 현황만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조사된 가구수도 47가구이며, 이 가구는 2021년 14차년도 조사부터 정식 표본가구로 인정된다. 따라서 13차년도 분석과정에서 이들 가구의 데이터는 제외된다.

새롭게 표집된 분가가구의 사유를 살펴보면 직장으로 인한 분가(56가구)가 가장 많고, 혼인(19가구), 기타(6가구), 이혼(1가구)의 순이었다.

[표 11] 분가 유형별 분가 성공 가구수

(단위: 가구)

| 구분 | 직장 | 혼인 | 이혼 | 기타 | 합계 |
|---|---|---|---|---|---|
| 전체 | 56 | 19 | 1 | 6 | 82 |
| 서울 | 11 | 2 | 0 | 2 | 15 |
| 부산 | 4 | 2 | 0 | 0 | 6 |
| 대구 | 1 | 2 | 0 | 0 | 3 |
| 인천 | 4 | 2 | 0 | 1 | 7 |
| 광주 | 4 | 0 | 0 | 0 | 4 |
| 대전 | 3 | 1 | 0 | 0 | 4 |
| 울산 | 0 | 0 | 1 | 0 | 1 |
| 경기 | 10 | 5 | 0 | 1 | 16 |
| 강원 | 2 | 1 | 0 | 0 | 3 |
| 충북 | 3 | 0 | 0 | 1 | 4 |
| 충남 | 4 | 0 | 0 | 1 | 5 |
| 전북 | 1 | 1 | 0 | 0 | 2 |
| 전남 | 3 | 0 | 0 | 0 | 3 |
| 경북 | 5 | 0 | 0 | 0 | 5 |
| 경남 | 0 | 2 | 0 | 0 | 2 |
| 제주 | 1 | 0 | 0 | 0 | 1 |
| 세종 | 0 | 1 | 0 | 0 | 1 |

### 6) 13차년도 횡단표본 가구 현황

총 805개 조사구 별로 5개 가구를 계통추출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극히 일부 조사구에서는 조사 거절이나 접촉 실패 등의 사유로 5개 가구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이 경우 조사구 특성이 유사한 타 조사구에서 부족한 표본수만큼 더 채워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초 접촉 시 조사를 거절했던 가구가 뒤늦게 조사에 참여한 사례 등이 더해지면서 최종 표본수는 4,030개로 확정되었다. 목표표본수 대비 5개 가구가 더 표집되었으나 [표 12]와 같이 층별로 조사 완료된 표본수는 목표표본수와 매우 유사하다.

[표 12] 13차년도 횡단표본 가구 구성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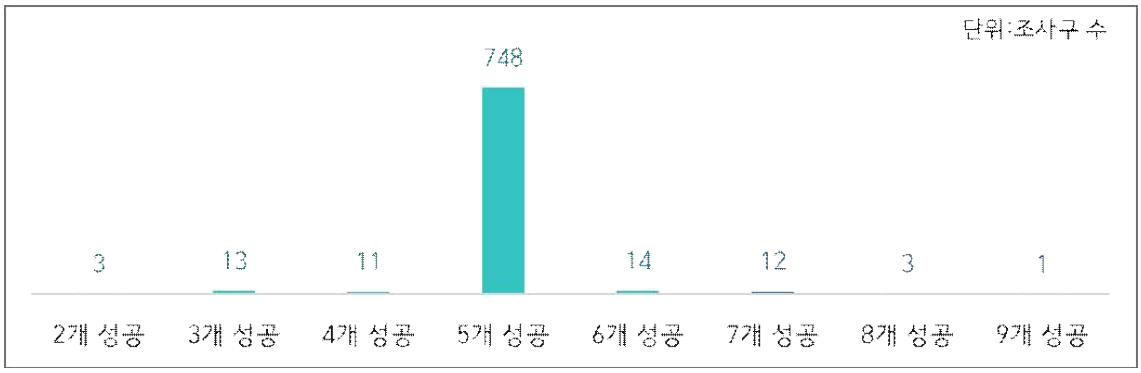
| 표집틀 | 인구주택총조사조사구 (특정지역 과대표집 포함) | | | | 신축아파트 조사구 | 합계 |
|---|---|---|---|---|---|---|
| 지역특성 | 동부 | | 읍면부 | | | |
| 조사구 형태 | 일반 | 아파트 | 일반 | 아파트 | 아파트 | |
| 전국 | 1,560 (1,550) | 1,753 (1,755) | 389 (395) | 202 (200) | 126 (125) | 4,030 (4,025) |
| 서울 | 487 (485) | 289 (290) | - | - | 10 (10) | 786 (785) |
| 부산 | 110 (110) | 155 (155) | 10 (10) | 10 (10) | 10 (10) | 295 (295) |
| 대구 | 80 (80) | 100 (100) | 10 (10) | 10 (10) | 5 (5) | 205 (205) |
| 인천 | 111 (110) | 107 (105) | 10 (10) | 10 (10) | 11 (10) | 249 (245) |
| 광주 | 40 (40) | 95 (95) | - | - | 5 (5) | 140 (140) |
| 대전 | 55 (55) | 70 (70) | - | - | 5 (5) | 130 (130) |
| 울산 | 35 (35) | 50 (50) | 10 (10) | 10 (10) | 5 (5) | 110 (110) |
| 세종 | 10 (10) | 45 (45) | 10 (10) | 10 (10) | - | 75 (75) |
| 경기 | 291 (290) | 362 (365) | 65 (65) | 47 (45) | 20 (20) | 785 (785) |
| 강원 | 42 (40) | 55 (55) | 23 (25) | 15 (15) | 10 (10) | 145 (145) |
| 충북 | 40 (40) | 50 (50) | 25 (25) | 15 (15) | 5 (5) | 135 (135) |
| 충남 | 35 (35) | 55 (55) | 45 (45) | 20 (20) | 10 (10) | 165 (165) |
| 전북 | 62 (60) | 110 (110) | 28 (30) | 10 (10) | 5 (5) | 215 (215) |
| 전남 | 37 (35) | 55 (55) | 43 (45) | 10 (10) | 5 (5) | 150 (150) |
| 경북 | 55 (55) | 60 (60) | 65 (65) | 15 (15) | 10 (10) | 205 (205) |
| 경남 | 70 (70) | 95 (95) | 45 (45) | 20 (20) | 10 (10) | 240 (240) |

* 조사 완료 표본수 (괄호 안은 조사 설계 목표표본수)

전체 805개 조사구 중 92.9%에 해당하는 748개 조사구에서 목표표본수인 5개 가구를 성공했다. 27개 조사구에서는 5개 표본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조사구 내 모집단 가구수 15개 이하(조사구 3개)', '조사구 접촉 중단(공동주택 차원의 출입 금지 : 조사구

15개)', '전수 접촉 후 목표표본수 조사 실패(조사구 9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조사구별 신규 표본 조사 현황




표본가구 중 단순 거절 가구나 부재중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4회까지 재방문을 진행 했다. 다만, 가구에서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에는 민원 예방을 위해 더이상 방문하지 않고, 다음 순서의 가구로 표본을 대체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총 4,030개 가구를 성공하기 위해 15,257개 가구에 대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그 중 126개 가구는 가구 소멸 및 비적격 가구로 재정패널 조사 대상 가구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가구 중 7,884개 가구는 조사 거절, 3,059개 가구는 가구원 전원 부재, 158개 가구는 적격 가구원 부재를 이유로 조사에 실패했다. 조사원들의 현장 보고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표 13] 표본 가구 접촉 결과

(단위: 가구, %)

| 구분 | 성공 (A) | 조사 실패(B) | | | | 비적격(C) | | | 응답률(%) A ÷ (A+B) |
|---|---|---|---|---|---|---|---|---|---|
| | | 조사 거절 | 가구 부재 | 적격 가구원 부재 | 소계 | 가구 소멸 | 그 외 비적격 | 소계 | |
| 전체 | 4,030 | 7,884 | 3,059 | 158 | 11,101 | 83 | 43 | 126 | 26.6 |
| 서울 | 786 | 1,735 | 681 | 41 | 2,457 | 7 | 2 | 9 | 24.2 |
| 부산 | 295 | 534 | 210 | 10 | 754 | 6 | 5 | 11 | 28.1 |
| 대구 | 205 | 373 | 137 | 7 | 517 | 4 | 3 | 7 | 28.4 |
| 인천 | 249 | 636 | 250 | 2 | 888 | 3 | 1 | 4 | 21.9 |
| 광주 | 140 | 240 | 102 | 5 | 347 | 2 | 2 | 4 | 28.7 |
| 대전 | 130 | 215 | 74 | 6 | 295 | 4 | 1 | 5 | 30.6 |
| 울산 | 110 | 192 | 94 | 0 | 286 | 8 | 2 | 10 | 27.8 |
| 세종 | 75 | 186 | 72 | 8 | 266 | 0 | 0 | 0 | 22.0 |

| 구분 | 성공 (A) | 조사 실패(B) | | | | 비적격(C) | | | 응답률(%) A ÷ (A+B) |
|---|---|---|---|---|---|---|---|---|---|
| | | 조사 거절 | 가구 부재 | 적격 가구원 부재 | 소계 | 가구 소멸 | 그 외 비적격 | 소계 | |
| 전체 | 4,030 | 7,884 | 3,059 | 158 | 11,101 | 83 | 43 | 126 | 26.6 |
| 경기 | 785 | 1,852 | 601 | 36 | 2,489 | 5 | 1 | 6 | 24.0 |
| 강원 | 145 | 212 | 69 | 4 | 285 | 4 | 1 | 5 | 33.7 |
| 충북 | 135 | 223 | 96 | 2 | 321 | 8 | 2 | 10 | 29.6 |
| 충남 | 165 | 256 | 123 | 3 | 382 | 2 | 1 | 3 | 30.2 |
| 전북 | 215 | 329 | 152 | 12 | 493 | 10 | 8 | 18 | 30.4 |
| 전남 | 150 | 241 | 106 | 2 | 349 | 6 | 1 | 7 | 30.1 |
| 경북 | 205 | 307 | 144 | 7 | 458 | 3 | 10 | 13 | 30.9 |
| 경남 | 240 | 354 | 147 | 13 | 514 | 11 | 3 | 14 | 31.8 |

* 가구 부재 : 가구원 전원 부재
* 적격 가구원 부재 : 가구원은 있으나 조사 적격 가구원(가구주 등)이 부재
* 가구 소멸 : 철거, 빈집, 주소지 오류
* 그 외 비적격 : 신규 생성 가구, 비주거 시설 등

## 3. 가중치 산출

### 1) 1차년도(2008년) 가중치

복합표본조사(complex sample survey) 자료의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일반적으로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에 대한 조정 그리고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사후층화 또는 레이킹(raking)에 의한 조정의 세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1차년도 재정패널 자료를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그리고 레이킹 조정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작성하였다. 모집단의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가중치를 기반으로 적절하게 보정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재정패널의 구축을 위하여 사용된 표본설계 및 모집단 정보를 통해 작성된 가중치를 이용하여 모수의 불편 추정량(근사 불편 추정량)을 구하는 것이 가중치 산출의 목적이다.

(1) 표본설계

표본추출을 위한 표집틀(sampling frame)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와 2006~2008년 신규 아파트 자료를 병합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발생한 가구 모집단의 변화를 표집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신규 아파트 자료의 구분 변수를 1차 층으로 정의하고 각 층으로부터 독립적인 표본을 추출함으로서 재정패널 표본을 구성하였다.

각 표집틀로부터 가구 추출을 위해서는 각 표집틀을 층화한 후 각 층내에서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층화 이단계 추출법이 사용되었다. 9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 읍면/동부, 일반/아파트가 사용되었으며 층내의 조사구 정렬을 위해서는 시군구와 조사구내의 가구 연건평의 최빈값을 사용하였다. 신축아파트 자료의 경우, 근접 가구들을 묶어서 크기가 50~100인 일종의 조사구를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조사구의 층화를 위해서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광역시도)을 사용하였고 정렬변수로는 시군구와 대표평수를 사용하였다.

각 표집틀에서 정의된 층의 조사구 크기에 비례하여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실제로 빈곤지역과 부유지역을 구분하고 이들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수의 패널을 확보하고자 해당 지역의 할당 조사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추출된 조사구로부터 평균적으로 5가구씩 추출하였다.

(2) 표본설계 가중치 및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

1차년도 원패널 5,014개 가구와 2차년도에 추가된 620개 대체가구를 합하여, 총 5,634개 가구에 표본설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620개 대체가구는 2차년도에 조사 실패한 618개 원패널 가구를 대체하기 위하여 추가된 가구이다(실패한 가구에서 두 가구가 추가로 조사되어 차이 발생). 따라서 1차년도 가중치 산출에서는 620개 대체가구를 무응답 가구로 처리하고 원패널 5,014개 가구에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표본설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위 식에서 $N_h$는 $h$층의 모집단 조사구수, $n_h$는 $h$층의 표본 조사구수, $N_{hi}$는 $h$층 조사구 $i$의 모집단 가구수, 그리고 $n_{hi}$는 $h$층 조사구 $i$의 표본 가구수를 나타낸다.

1차년도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표본설계 가중치에 응답률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되어 진다. 응답률은 $r_{hi}/n_{hi}$로 계산되어 지며, $r_{hi}$는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응답 가구수이다. 조사된 $h$번째 층의 $i$번째 조사구의 $j$번째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na} = \frac{N_h}{n_h} \times \frac{N_{hi}}{n_{hi}} \times \left(\frac{r_{hi}}{n_{hi}}\right)^{-1} = \frac{N_h}{n_h} \times \frac{N_{hi}}{r_{hi}}.$$

(3) 레이킹(raking) 가중치 보정

산출된 무응답 보정 가구 가중치($w_{hij}^{na}$)는 다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를 바탕으로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각 지역별(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통계청의 가구 및 인구 추계 통계는 소득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레이킹 변수로써 신뢰할만한 수준의 소득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 지표는 레이킹 보정 변수로 반영하지 않았다. 레이킹을 이용하여 보정된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w_{hij}^{rak} = w_{hij}^{na} \exp\left(\underline{x}_{hij}^{'} \underline{\lambda}\right)$$

여기서 $\underline{x}_{hij}$는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들을 지시변수들로 표현한 벡터이며 $\underline{\lambda}$는 $\sum w_{hij}^{rak} x_{hij} = t_x$의 해이며 $t_x$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8년 각 레이킹 변수들의 추계 값을 나타낸다. 레이킹을 통한 가중치의 보정 결과 2008년 추계 자료와의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여 가중치의 최댓값을 9,000으로 제한하였다. 가중치가 9,000을 초과하는 극단 관측치들의 경우 가중치를 9,000으로 조정하고, 레이킹 보정 가중치에서 9,000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벤치마킹범주(지역*가구주 성*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 2) 2차년도(2009년) 가중치

재정패널 2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2개년도(2008년과 2009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2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에 2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과 2009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서 계산되어 진다.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위해서는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와 2008년 변수들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응답가구의 응답확률을 예측하였다. 2009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2008년에 작성된 각 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w_{2008}$이라 표기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예측 응답확률을 $\hat{p}_{2009}$라 할 때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가중치는

$$w_{2009} = w_{2008} \times \hat{p}_{2009}^{-1}$$

로 표현된다. 실제 $\hat{p}_{2009}$의 예측을 위하여 적합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log\left(\frac{p_i}{1-p_i}\right) = \beta_0 + \text{가구주성별}\beta_1 + \text{가구원수}\beta_2 + \text{가구주연령}\beta_3 + \text{지역}\beta_4 + \text{가구연간소득총액}\beta_5$$

이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2009년 추계 자료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1차년도에 사용된 레이킹 기법이 시용되었다. 2009년 레이킹을 위하여서 지역과 가구주의 성,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2,500으로 제한하였다.

(2)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와 분가가구(2008년 6월 이전 분가)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09년 추계 자료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각 가구형태별 1단계 가중치 산출을 살펴보면, 먼저 2차년도에 조사된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의 경우,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1단계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무응답 보정 방법은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는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사용했으며, 200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9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로는 원패널 가구의 경우 종단면과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2008년 자료가 없는 대체가구는 대응되는 원패널 가구(2차년도 조사실패 가구)의 2008년도 5개 변수(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가구연간소득총액)를 그대로 사용했다.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사유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였다.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고 기타 사유의 분가가구 경우, 원가구의 당해년도 무응답이 보정된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하였다. 또한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12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를 조사 성공한 23가구에 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가사유가 결혼인 35가구를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내에서 2차년도 무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응답가구에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기존가구와 분가가구의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0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 3) 3차년도(2010년) 가중치

재정패널 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3개년도(2008년~201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3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1차년도, 2차년도 그리고 3차년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가중치 산출에는 1차년도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w_{hij}^{na}$)를 사용하였다. 3차년도 무응답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2차년도 종단면의 무응답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했으며, 2010년 종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3개년도 모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300으로 제한하였다.

(2)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08년 6월 이전 분가) 그리고 신규분가(2008년 7월 ~ 2009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0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0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0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다. 기존분가의 경우, 3차년도에 모든 가구가 응답하여 2차년도에 부여한 횡단면 1단계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

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1,700으로 제한하였다.

### 4) 4차년도(2011년) 가중치

재정패널 4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4개년도(2008년~2011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4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4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4개년도(2008년~2011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1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5,000으로 제한하였다.

(2)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09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09년 7월 ~ 2010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1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1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1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4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4,000으로 제한하였다.

### 5) 5차년도(2012년) 가중치

재정패널 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5개년도(2008년~2012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5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 (1) 5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5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5개년도(2008년~2012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개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8,000으로 제한하였다.

#### (2)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5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10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0년 7월 ~ 2011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2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2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2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2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5차년도 횡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1차년도와 동일한 방법을 통해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13,000으로 제한하였다.

### 6) 6차년도(2013년) 가중치

재정패널 6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6개년도(2008년~2013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6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6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6개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종단면 가중치는 6개년도(2008년~2013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3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2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연령 범주를 4개(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50세 미만/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2)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6차년도 횡단면 가중치는 6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2011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2011년 7월 ~ 2012년 6월 이전)에 따른 가중치의 산출과 이후 2013년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의 1단계 가중치 산출은 패널 탈락으로 인한 무응답 보정으로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기존가구의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예측 응답확률은 기존가구와 기존분가를 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된다. 2013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했다. 2013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는 2013년에 응답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갖는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

가는 2차년도 분가가구의 가중치 부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1단계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는 2013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레이킹을 위해 사용된 변수와 모집단 분포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3) 6차년 종단면, 횡단면 가중치 산출을 위한 레이킹 방안 변경

기존 1차~5차까지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는 지역(제주도 제외 15개 시도) 가구주의 성(남/여), 연령(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 수(4인 미만/4인 이상)이다. 그리고 레이킹 가중치 보정을 통한 벤치마킹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중치가 크게 나타나는 관측치가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차수마다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하여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 레이킹 방안을 위하여 고려한 벤치마킹 정보 중 가구주의 연령의 범주를 기존의 4개의 범주(39세 미만/40~49세/50~59세/60세 이상)에서 2개의 범주(50세 미만/50세 이상)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4개의 범주를 사용하는 방안보다 가중치의 분포에서 지나치게 큰 관측치가 통제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레이킹 방안의 적용 후 관측치의 최대값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7) 7차년도(2014년) 가중치

재정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7개년도(2008년~2014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7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개년도(2008년~2014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7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4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6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 7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7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7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2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2년 7월 ~ 2013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4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4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4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6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8) 8차년도(2015년) 가중치

재정패널 8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8개년도(2008년~2015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8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1) 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8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개년도(2008년~2015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8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5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최종 가중치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7차년도의 분포 형태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2) 8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8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8차년도(2015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3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3년 7월 ~ 2014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5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5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5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7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9) 9차년도(2016년) 가중치

#### (1)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9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개년도(2008년~2016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6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9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0,000으로 제한하였다.

#### (2) 9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9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9차년도(2016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4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4년 7월 ~ 2015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6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6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6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8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10) 10차년도(2017년) 가중치

#### (1)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10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개년도(2008년~2017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9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7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0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5,000으로 제한하였다.

#### (2) 10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10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0차년도(2017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5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5년 7월 ~ 2016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7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7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7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9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11) 11차년도(2018년) 가중치

#### (1) 11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11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1개년도(2008년~2018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11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8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1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35,000으로 제한하였다.

(2) 11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11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1차년도(2018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6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6년 7월 ~ 2017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 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다. 기존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를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8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8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2018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수는 10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12) 12차년도(2019년) 가중치

(1) 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12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2개년도(2008년~2019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3차년도 종단면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11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은 가중치는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19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6차년도 종단면 레이킹 보정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 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보다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된 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40,000으로 제한하였다.

(2) 12차년도 횡단면 가중치 산출

11차년도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2차년도(2019년) 조사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먼저 기존 가구(원패널 가구, 대체가구), 기존분가 가구(2017년 6월 이전 분가)와 신규분가 가구(2017년 7월 ~ 2018년 6월 이전)에 대해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한 이후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 보정의 2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 무응답 보정 가중치 산출은 2차년도 횡단면 무응답 보정에서 사용한 무응답 보정방법과 동일하다. 기존 가구에 대해서는 1차년도의 표본설계 가중치($w_{hij}$)를 사용하고, 기존분가 가구는 원가구의 1차년도 표본설계 가중치를 적용하되, “결혼”에 의한 분가 가구는 원가구 가중치의 1/2을 부여하였다. 기존가구와 기존분가 가구의 응답률은 2019년 횡단면 응답여부 변수(2019년 응답=1, 무응답=0)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존 가구의 경우 설명변수는 2차년도와 동일하게 2008년도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총액을 사용하였고, 기존분가 가구에 대해서는 관측치별 조사된 최근 자료의 지역, 가구주 성,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 연간 소득총액을 사용했다.

신규분가 가구는 분가 전 원가구의 무응답 보정 가중치를 부여하되, 분가사유가 “결혼”인 경우 마찬가지로 원가구 가중치의 1/2로 조정하였다. “결혼”에 의한 신규분가 가구 중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원가구의 2008년 연간 총소득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에 성공한 “결혼” 사유 신규분가 가구에 각각 배분하였다.

각 가구 형태별로 1단계에서 부여된 무응답 보정 가중치는 종단면 레이킹 보정방법과 동일하게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횡단면 분석을 위한 가구 수는 11차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고, 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도 유사하여 별도로 가중치 상한을 제한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 13) 13차년도(2020년) 가중치 산출

#### (1) 13차년도 가중치 설계 방향

13차년도 재정패널 가중치는 2008년부터 추적한 기존 패널만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와 2020년에 새로 구축한 신규 패널까지 포함한 횡단면 가중치 2종을 산출할 예정이다. 기존 패널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가중치는 3차년도 가중치 산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2차년도 패널 탈락으로 인한 실제 표본 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1단계 보정을 우선 진행하며, 모집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인구 및 가구 추계자료를 이용하여 2단계 레이킹 보정 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재정패널 13차년도 조사결과 분석을 위해 13개년도(2008년~2020년)의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와 13차년도 횡단면 자료 분석을 위한 가중치가 각각 산출되었다. 또한, 2020년에 추가된 가구를 포함한 자료의 분석을 위한 횡단면 통합 가중치 역시 산출되었다.

#### (2) 1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산출

13차년도 종단면 분석을 위한 가중치는 13개년도(2008년~2020년) 모두 응답한 가구에 부여되며, 패널 탈락 등으로 인한 실제 표본크기 감소를 반영하기 위한 무응답 보정은 기존 종단면 무응답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응답률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응답여부(13개년 모두 응답=1, 그 외=0)이고, 설명변수는 기존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총액을 사용했다.

무응답 보정을 통하여 얻어진 가중치는 202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를 이용한 레이킹을 통해 보정되었다. 2020년 레이킹을 위해서 사용된 가구 변수는 기존 종단면 레이킹 보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으며, 연령 범주는 2개(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종단면 가중치의 경우 패널 탈락 등으로 응답가구의 가중치가 이전년도에 비해 증가하는데, 레이킹 이후 계산되어진 13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 레이킹 이후 가중치의 최댓값을 60,000으로 제한하였다.

(3) 13차년도 횡단면 통합 가중치 산출

횡단면 통합 가중치는 기존 패널 가구에 2020년에 추가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4,030가구에 부여되었다. 통합 횡단면 가중치가 부여된 총 가구는 8,792 가구이다. 통합 가중치 작성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1단계에서는 2020년에 추가되어 조사된 가구에 가중치를 부여되었으며, 이 때 각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는 층화 이단계 집락추출법 하에서 계산된 설계 가중치가 사용되었다. 즉, 각 층 내에서의 조사구 추출율과 추출된 조사구 내 조사된 가구의 비율을 이용하여 가구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2단계에서는 기존 가구패널 중 2020년에 조사되어 13차 횡단면 가중치가 계산된 가구와 1단계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신규 가구를 결합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조사구 층(동부/읍면부, 17개 광역시도, 일반/아파트) 내에서 기존 패널의 가구수와 추가된 가구수의 비율을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층 $h$에 속한 기존 패널의 가구수를 $n_{old,h}$ 그리고 신규 가구수를 $n_{new,h}$로 정의하면, 해당 층에 속한 기존 패널 가구에 부여된 13차년도 횡단면 가중치에는 $n_{old,h}/(n_{old,h}+n_{new,h})$을 곱하고, 추가된 가구에 1단계에서 부여된 가중치에는 $n_{new,h}/(n_{old,h}+n_{new,h})$을 곱하여 기초 통합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가구패널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각 가구에 부여된 이전 가중치를 층 내에서 낮추어서 모집단 가구 수 추정 시 비상식적인 수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통계적으로 최적의 방안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가구수를 이용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작성된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13차 횡단면 그리고 종단면 가중치 작성 시 고려한 레이킹 방법을 적용하였다. 레이킹을 위해서는 2020년 인구 및 가구 추계 자료 중 지역, 가구주의 성별, 연령(50세 미만, 50세 이상), 그리고 가구원수(4인 미만, 4인 이상)의 주변분포를 사용하였다.

# 제 3 장 실사 진행 과정

## 1. 실사 준비 과정

### 1) 조사표설계

2020년 재정패널 조사의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2019년에 실시한 12차년도 조사표를 기본으로하되, 전년도 조사 결과 나타난 응답자나 조사원의 조사표수정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전년도 조사에서 응답자와 조사원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수정 설계되었다.

###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2020년 재정패널 조사에 최종적으로 투입된 조사원은 모두 107명이다. 재정패널 조사에 투입되는 조사원의 대부분은 재정패널 조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숙련된 조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습형식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조사표를 바탕으로 지난해 조사에서 변경된 문항이나 매년 강조돼야 할 주요 변수를 집중 설명하는 단계와 작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수가 많거나 조사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오류로 응답한 후 이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원들이 직접 오류를 찾고 왜 오류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진행하였다.

### 3) 조사 도구 제작

재정패널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응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사 도구를 제작해서 활용했다.

① 설문지: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 가구원 의식조사 조사표세 종류의 설문지 제작
② 조사원 신분증·명함: 조사원의 신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작. 신분증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직인을 인쇄하여 응답자가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③ 조사 안내문: 재정패널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 (기존 가구와 신규 가구 별도 제작)
④ 비밀보장각서: 조사가 통계적인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된다는 확인을 조사원이 서명하여 응답자에게 제출
⑤ 협조 공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IPSOS 명의의 공문을 발급받아 응답자에게 열람토록 함.

⑥ 조사지침서 및 조사원 가이드: 조사진행 지침과 용어에 대한 해설을 명기
⑦ 보기카드: 조사 진행 시 참고 도구로 활용
⑧ 소득공제 서류 양식: 응답자의 소득공제 내역을 필사하는 경우를 대비해 빈 양식을 인쇄 배포
⑨ 홈택스 이용 가이드: 응답자의 홈택스 사이트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 형식의 리플렛 제작 및 배포
⑩ 기타 관련 안내 자료: 응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설명자료를 리플렛의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⑪ 방역 물품: 면접원별로 체온계를 지급하여 조사 전 체온을 측정하고 37.5도 이하일 경우에만 가구 방문을 실시함. 면접원별로 손 소독제를 지급하여 가구 방문 시 방역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고, 면접조사 활동 시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지급하였음.

### 4) 기타 조사 홍보 및 안내

#### (1) 080 안내전화(수신자부담 무료전화) 설치 및 운영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대상 가구의 문의에 곧바로 응대하기 위해 수신자 부담 무료전화(080-850-11**)를 설치·운영했다. 추가로 문자 및 SNS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휴대폰 회선(010-2014-03**,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가능하며 통화는 불가함)를 설치하여 신속한 응대가 가능하게끔 하였다.

####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 안내

본원 재정패널 조사 홈페이지[4]와 입소스 홈페이지[5]에 조사 안내문을 올려 조사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변경페이지[6]를 별도로 생성하여 입소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패널이 이사를 할 경우 그 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패널 관리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조사 안내문 발송

재정패널 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기존 패널용과 신규 가구용으로 별도 제작했으며 현장 조사 시작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밖에 소득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사전, 사후)을 제작해서 해당 가

4) www.kipf.re.kr/panel
5) www.ipsos.com/ko-kr
6) https://online.ipsoskorea.com/2020_finance_panel/page_info_start.php

구에 발송하였다.

(4) 사전 전화 컨택

기존 패널 가구에서 조사 안내문을 받는 시점인 6월 초부터 6월 중순 사이에 담당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2020년도 조사를 소개하고 대략적인 방문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였다.

## 2. 실사 진행 과정

### 1) 주별 진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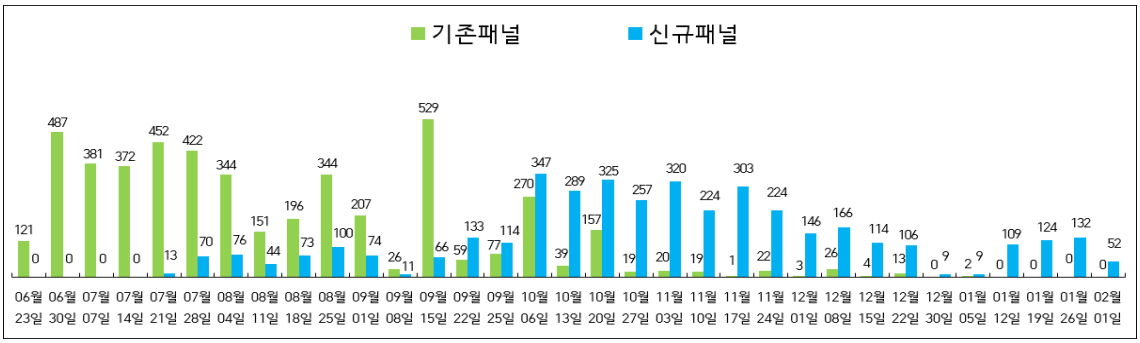
2020년 재정패널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시점이 예년에 비해 1개월 가량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각 단계별 일정이 1개월씩 순연되어 진행되었다. 3월 초순에서 6월 초순까지 약 4개월간 조사 설계 및 준비 과정을 거쳤다. 조사원 교육은 5월 말에 실시하였다. 기존패널은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실사에 착수하였다. 신규패널은 7월 중순에 실사를 착수하였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전제출 이벤트와 종합소득 신고서류 사전제출 이벤트를 각각 3월과 6월에 실시하여 증빙서류 수집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8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재정패널 조사에서 응답자와 면접원 간의 접촉에서 위험성이 있고,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사를 중단하였다. 9월 셋째주까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할 기세를 보이지 않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실사를 재개하였고, 수도권 확진자 수가 두 자리로 감소한 9월 넷째주부터 전국에서 실사를 재개하였다. 이에 따라, 실사 종료 일정도 3주 가량 순연됐다. 이 시점부터 기존 패널에 비해 다소 주춤했던 진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패널 위주로 접촉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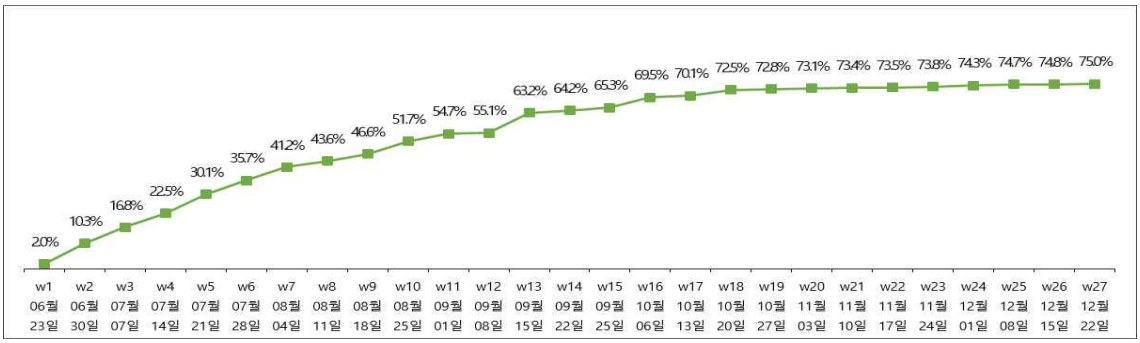
이후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실사를 중단하였고, 12월 첫째주부터는 인천, 강원 및 경기 일부 시군구에서만 선별적인 조사를 재개하였다. 12월 셋째주에 기존패널 원표본 및 분가표본의 유지율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래서 1월 초부터는 조사 중단중이었던 서울 전 지역,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조사를 재개하고 신규패널 조사에 집중하였다.

12월 셋째주에 기존 패널, 2월 첫째주에 신규패널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13차 조사에서는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패널과 면접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조세재정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연구진과 실사팀의 대응 전략을 활용하여 원표본 유지율 목표달성과 신규표본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림 2] 주별 조사성공 표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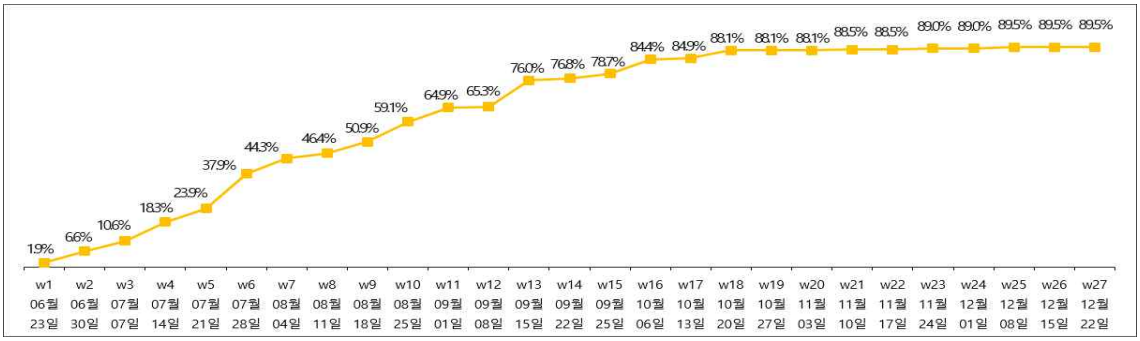



[그림 3] 원표본가구 주간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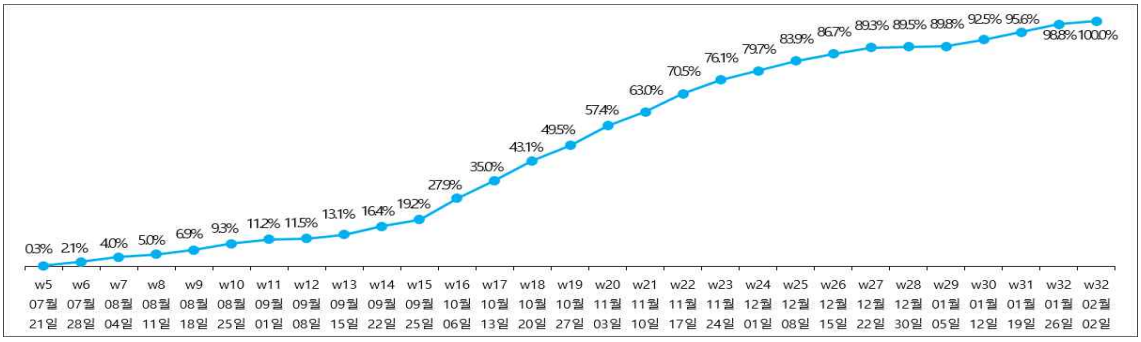



※ 패널 유지율은 최초표본가구(최초표본+추가표본) 조사 성공률을 의미하며, 산출방식은 패널유지율(B)임.

[그림 4] 분가가구 주간 유지율




[그림 5] 신규가구 주간 진행률



### 2) 조사 진행 요일 및 시간대 분포

전반적으로 모든 요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토요일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시간대의 경우 12시~18시 사이가 54.7%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늦은 시간인 6시 이후(13.9%)보다는 오전 시간대(31.4%)에 조사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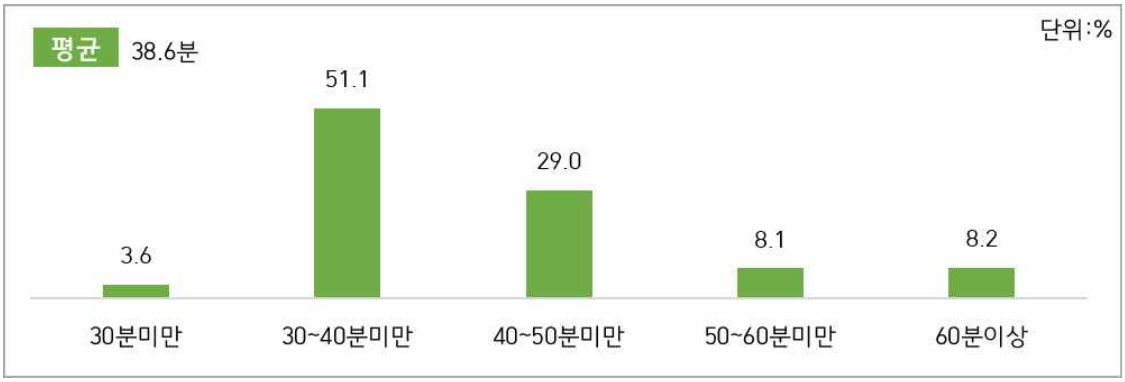
[그림 6] 조사 요일 및 시간대




### 3) 조사 소요 시간

가구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38.6분으로 지난 해 평균시간(37.9분)과 비교하였을 때 거의 동일했다. 시간대별로는 '30~39분'이 51.1%로 가장 많았고, '40~49분'이 29.0%로 두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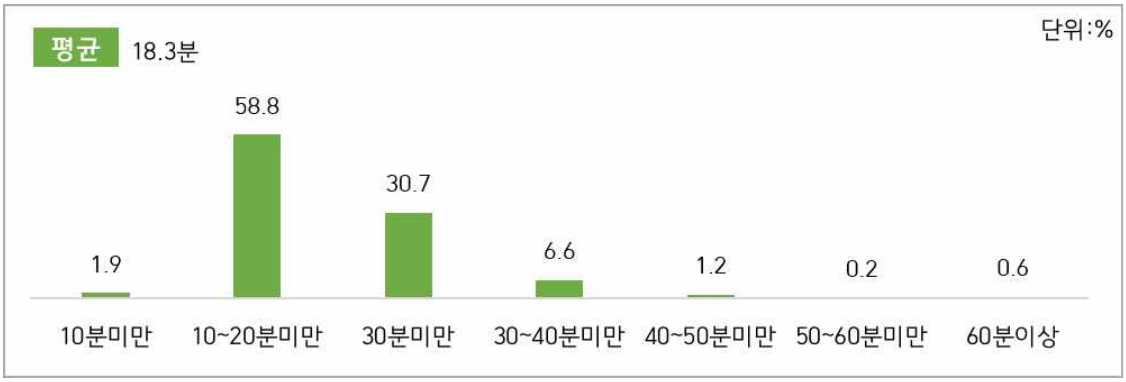
[그림 7] 가구 조사표소요시간




가구원 조사표의 평균 조사 시간은 약 18.3분으로 나타나 지난해(17.9분)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원 조사표는 해당되는 가구원에게만 조사하고 가구 조사표에 비해 분량도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 20분 내에서 거의 조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신규패널이 구축되

는 과정에서 조사를 처음 진행하는 패널이 있었기 때문에 30분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림 8] 가구원 조사표소요 시간




### 4) 조사 방법

가구 조사표는 응답자의 요청이나 가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설문지를 유치해서 조사한 경우는 총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조사로 진행되는 설문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방문하여 수거 시에 반드시 설문지를 검토하여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한 설문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설명해주고 응답을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가 해를 거듭하면서 조사에 대한 누적되는 피로감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 등으로 거절 의사를 보이는 가구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시한 가구, 그리고 가구원의 개인적인 사정상 수시로 집을 비워 조사원과 만나기 힘든 경우는 응답자의 요청에 의해 우편조사를 진행했다. 우편조사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보내고 응답자가 작성한 후 다시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응답자가 작성한 응답을 검토 후 전화를 통해 부정확하고 누락된 응답을 확인하는 과정을 모두 거쳤다. 올해 진행된 우편조사는 총 1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조사와 우편조사 외의 나머지 모든 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한 상태에서 직접 진행됐다.

[표 14] 지역별 유치조사 및 우편조사 현황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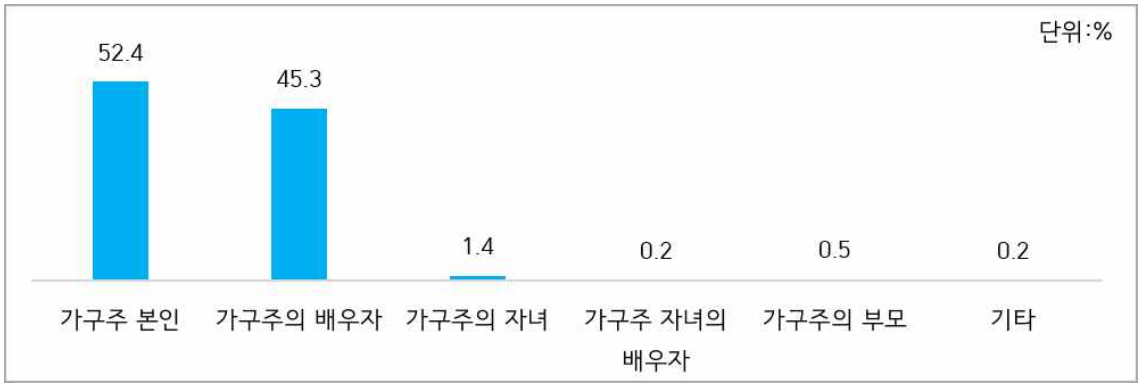
| 구분 | 유치조사 | | | 우편조사 | 계 |
|---|---|---|---|---|---|
| | 원가구 | 분가가구 | 신규가구 | 원가구 | |
| 서울 | 31 | 3 | 106 | 1 | 141 |
| 부산 | 1 | - | - | - | 1 |
| 광주 | - | - | - | - | - |

| 구분 | 유치조사 | | | 우편조사 | 계 |
|---|---|---|---|---|---|
| | 원가구 | 분가가구 | 신규가구 | 원가구 | |
| 대구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계 | 32 | 3 | 106 | 1 | 142 |

### 5) 가구 조사표응답자 선정

가구 조사표는 가구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주 본인(52.4%)이나 가구주의 배우자(45.3%)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한 경우가 전체 표본의 97.7%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림 9] 가구 조사표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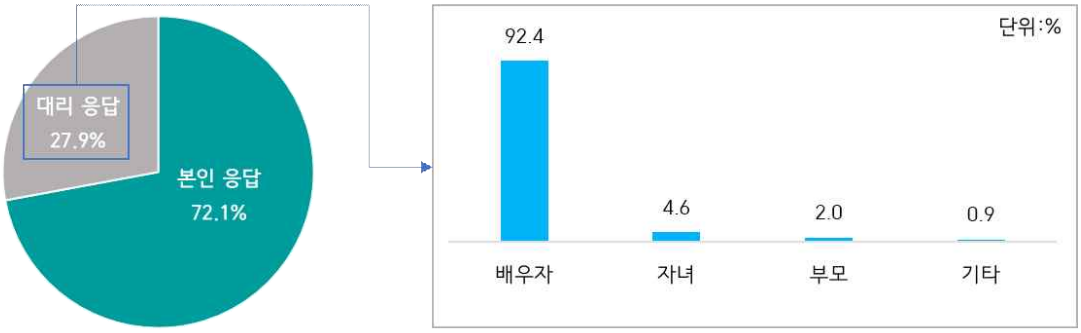



### 6) 가구원 조사표응답자 선정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사람은 총 14,759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득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 경우가 72.1%였으며, 소득자의 배우자 등 소득을 관리하는 타가구원이 응답한 사례가 27.9%로 나타났다. 재정패널 조사의 가구원 조사표는 가구원 소득활동 상황과 소득과 같은 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대리응답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을 관리하는 가구원이나 타가구원 명의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가구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사표상에는 대리 응답으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소득자 본인의 동석 하에 조사가 진행되거나 대리 응답자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전화를 통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타 가구원이 대신 응답했다고 해서 응답의 정확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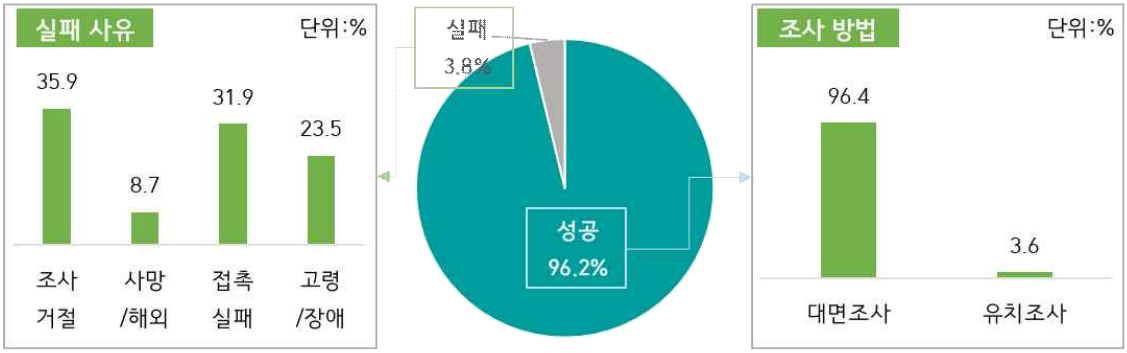
[그림 10] 가구원 조사표응답 현황




## 7) 가구원 의식 조사

가구원 의식조사의 경우 가구원 조사표응답자의 96.2%에 해당하는 14,204명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성공한 설문 가운데 96.4%는 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3.6%는 설문지를 유치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1] 가구원 의식조사 현황




가구원 의식조사 실패 사유를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실패한 554명의 가구원 중 35.9%는 조사를 거절하였으며 23.5%는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고령, 장애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하였고, 31.9%는 출장이나 여행,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가구원 접촉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소득세 및 소득공제 내역 증빙서류 수집

### 1) 증빙서류 수집 목적

가구원 조사표에서는 연간 소득, 연금·보험 지출 및 소득, 소득공제 내역, 결정세액 등의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과 결정세액 내역은 각 항목별로 복잡한 기준과 계산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금액을 회상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재정패널 조사는 1차년도 조사부터 소득공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수집해 오고 있다.

### 2) 수집 대상 서류

근로자는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간 소득내역과 공제내역, 결정세액 등의 정보가 들어 있다. 본 조사에서는 2019년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조사하므로 2020년 초 근무처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대상이 되었다.

종합소득 신고자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데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모든 서류를 다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소득공제명세서], 그리고 [세액공제명세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수집하기로 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므로 이 기간에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가 수집 대상이 되었다. 단, 방문판매나 보험모집과 같은 사업소득자는 연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집 서류에 포함시켰다.

### 3) 증빙서류 수집 현황

13차년도 조사 결과 2,658가구에서 3,183건의 서류가 수집되어 전체패널 기준 201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47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 8,792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수집률은 30.2%로 나타났다.

[표 15] 소득 증빙서류 수집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 수량* |
|---|---|
| 총 수집 건수 | 3,183 |
| 제출 가구원 수 | 3,177 |
| 제출 가구 수 | 2,658 |
| 근로소득 제출 건수 | 2,710 |
| 종합소득 제출 건수 | 473 |

* 서류 건수는 최종 수집된 서류의 수량을 의미하며, 가구와 가구원 수는 해당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함. 한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고, 한 가구원이 근로소득 서류와 종합소득 서류로 각각 2장 제출한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 제출 건수와 제출 가구수, 제출 가구원 수가 서로 다름.

모든 가구가 증빙서류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필요하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업소득자나 금융/임대소득자 중에서도 소득신고를 한 가구원만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기존패널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수집률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대상 65.3%의 가구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신고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은 44.0%가 서류를 제출하였고,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은 22.8%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널 가구만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자의 61.1%, 종합소득신고자의 33.5%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 16] 소득 증빙서류 수집률

(단위: 건, %)

| 구분 | | 패널 유형 | 해당 case | 제출건수 | 수집률(%) | [참고] 2019년 수집률 |
|---|---|---|---|---|---|---|
| 전체 유효표본 가구 | | 기존 | 4,762 | 1,987 | 41.7 | 42.0 (1,999/4,765) |
| | | 신규 | 4,030 | 671 | 16.7 | - |
| | | 합계 | 8,792 | 2,658 | 30.2 | |
| 소득신고 가구 | | 기존 | 3,042 | 1,987 | 65.3 | 66.3 (1,999/3,014) |
| | | 신규 | 2,671 | 671 | 25.1 | - |
| | | 합계 | 5,713 | 2,658 | 46.5 | |
| 가구원 |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존 | 3,434 | 2,099 | 61.1 | 62.8 (2,049/3,265) |
| | | 신규 | 2,720 | 611 | 22.5 | - |
| | | 합계 | 6,154 | 2,710 | 44.0 | |
| | 종합소득 신고 | 기존 | 1,003 | 336 | 33.5 | 41.7 (382/917) |
| | | 신규 | 1,075 | 137 | 12.7 | - |
| | | 합계 | 2,078 | 473 | 22.8 | |

*2019년 수집률의 괄호 안 수치는 '수집 건수/해당 케이스 숫자' 를 의미

12차년도에 이어 13차년도에 연속 제출한 가구원은 2,091명으로 가구원 설문 응답자의 26.7%였으며, 계속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은 4,795명으로 63.4%로 나타났다. 13차년도에만 제출한 가구원이 410명으로 5.4%, 12차년도에는 제출했지만 올해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은 335명으로 4.4%였다.

[표 17] 전년 대비 소득 증빙서류 제출 현황 (base : 기존 패널)

(단위: 명, %)

| | 계속 제출 | 계속 비제출 | 신규 제출 | 신규 비제출 | 총합계 |
|---|---|---|---|---|---|
| 가구원수(명) | 2,091 | 4,795 | 410 | 335 | 7,561 |
| 비율(%) | 26.7 | 63.4 | 5.4 | 4.4 | 100.0 |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의 가구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가구는 476건으로 나타났다. 기존 패널은 404개 가구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으며, 신규 가구는 72개 가구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다.

[표 18] 가구 내 증빙서류 2명 이상 제출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 | | 기존 패널 | 신규 가구 | 소계 |
| 1명 제출 | 1,618 | 1,623 | 1,593 | 1,583 | 599 | 2,182 |
| 2명이상 제출 | 349 | 378 | 406 | 404 | 72 | 476 |
| 합계 | 1,967 | 2,001 | 1,999 | 1,987 | 671 | 2,658 |

서류 수집 여부에 따른 소득공제 응답 유형을 살펴보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는 가구원은 3,177명,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회상에 따라 응답했다는 가구원이 4,963명이었다. 이 밖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가구원은 6,619명으로 전체 가구원 설문 응답자의 44.8%였다.

[표 19] 소득 및 공제내역 응답 유형

(단위: 명, %)

| 구분 | 회상 및 증빙 자료 확인 후 기입 | 증빙서류 제출 | 해당사항 없음 | 합계 |
|---|---|---|---|---|
| 가구원수(명) | 4,963 | 3,177 | 6,619 | 14,759 |
| 비율(%) | 33.7 | 21.5 | 44.8 | 100.0 |

# 제 4 장 재정패널 표본 특성

## 1. 조사 결과 분석 기준

### 1) 표본가구 구분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 된 기존패널의 표본가구 수는 4,809개로 이 중 2019년 7월 이후 신규 분가가구인 47가구를 제외하면 유효 표본수는 4,762개이다. 2020년에 신규로 조사한 신규패널 가구의 유효 표본 수는 4,030개이다. 따라서 기존패널과 신규패널을 합한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표집된 유효 표본 가구 수는 8,792개이다.

### 2) 기존 표본 연속참여 현황

최종 표집된 4,809개 가구의 특성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1차년도 조사에서 표집된 5,014가구 중 1~13차년도 연속 조사에 참여한 가구는 총 3,262개 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13개 년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표본 집단이다. 한편 2차년도에 추가표본으로 조사된 620가구 중 2~13차년도 모두 추적 성공한 448가구는 12개년도(2009~2020년)에 걸치는 종단적 분석만 가능하다.

[표 20] 최초가구·추가가구 연속 성공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 12차 | 13차 |
|---|---|---|---|---|---|---|---|---|---|---|---|---|---|
| 최초가구 | 5,014 | 4,396 | 4,122 | 3,954 | 3,838 | 3,754 | 3,697 | 3,629 | 3,564 | 3,488 | 3,423 | 3,357 | 3,262 |
| 추가가구 | - | 620 | 575 | 541 | 519 | 509 | 501 | 493 | 486 | 477 | 465 | 459 | 448 |
| 원가구 | 5,014 | 5,016 | 4,697 | 4,495 | 4,357 | 4,263 | 4,198 | 4,122 | 4,050 | 3,965 | 3,888 | 3,816 | 3,710 |

[표 21] 분가가구 연속 성공수

(단위: 가구)

| 구분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11차 | 12차 | 13차 |
|---|---|---|---|---|---|---|---|---|---|---|---|---|
| 2차년도 분가가구 | 80 | 67 | 65 | 62 | 61 | 61 | 60 | 59 | 56 | 54 | 52 | 52 |
| 3차년도 분가가구 | - | 70 | 66 | 60 | 58 | 58 | 55 | 54 | 53 | 51 | 51 | 50 |
| 4차년도 분가가구 | - | - | 94 | 84 | 79 | 77 | 75 | 73 | 72 | 71 | 70 | 70 |
| 5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72 | 70 | 69 | 66 | 64 | 62 | 61 | 60 | 58 |
| 6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73 | 69 | 66 | 65 | 63 | 61 | 60 | 59 |
| 7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68 | 64 | 63 | 61 | 61 | 60 | 58 |
| 8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70 | 69 | 65 | 61 | 60 | 60 |
| 9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70 | 64 | 59 | 55 | 54 |
| 10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86 | 83 | 76 | 72 |
| 11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 | 76 | 74 | 72 |
| 12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 | - | 91 | 88 |
| 13차년도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 | - | - | 82 |

분가 가구의 경우 기존 분가가구 722가구와 2019년 6월 이전 분가가구 35가구, 2019년 7월 이후 분가가구 47가구가 조사에 성공했다. 다만 7월 이후 분가가구는 유효 표본에서 제외되며, 횡단면 분석에 활용되는 분가가구 표본 수는 757개이다.

분석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며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되는 유효 표본 수도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가중치 보정

13차년도 재정패널 데이터에는 횡단면과 종단면 분석을 위한 2종의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다. 본 기초분석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의 가구 특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 4) 데이터 클리닝

본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2021년 12월말 공개되는 공식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대규모 사회조사에서는 조사 진행 과정의 오류로 인해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식데이터 공개 이후에도 종단면 분석을 통한 클리닝 작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 수록한 내용 중 일부가 수정 · 보완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표본가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본 기초분석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가중치 보정 후의 수치이며, 비교를 위해 직전 연도 조사인 12차년도 조사 결과를 함께 기술하였다.

### 1)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2개년도 가구주 성별, 연령대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 단위(%) | 성별 | | 연령대 | | | | |
|---|---|---|---|---|---|---|---|
| | 남자 | 여자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12차년도 | 68.9 | 31.1 | 5.6 | 15.4 | 24.8 | 17.4 | 36.8 |
| 13차년도 | 68.1 | 31.9 | 6.0 | 15.6 | 23.0 | 19.7 | 35.7 |

### 2) 가구주의 학력

2개년도  조사 간에 가구주의 학력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 재학/졸업의 비율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23] 가구주의 학력

| 단위(%) | 미취학 (안받음) | 중학교 재학/졸업 이하 | 고등학교 재학/졸업 | 대학(2년제+4년제) 재학/졸업 | 대학원 재학/졸업 |
|---|---|---|---|---|---|
| 12차년도 | 3.7 | 19.5 | 30.6 | 41.6 | 4.6 |
| 13차년도 | 2.8 | 18.1 | 31.8 | 42.9 | 4.5 |

### 3)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

2개년도 조사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 근로자(상용직)의 비율이 4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 단위(%) | 임금 근로자 (상용직) | 임금 근로자 (임시직) | 임금 근로자 (일용직)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무급 가족 종사자 | 무직/주부 /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
|---|---|---|---|---|---|---|---|
| 12차년도 | 43.5 | 5.9 | 5.7 | 18.7 | 3.2 | 0.7 | 22.4 |
| 13차년도 | 41.1 | 6.8 | 5.7 | 21.2 | 4.4 | 0.9 | 20.0 |

### 4) 가구주 변경 여부

설문조사 대상 시점인 2019년 한 해 동안 가구주가 변경된 가구는 1.8%로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는 가구주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 변경 사유는 가구원 전출입(29.7%)과 사망(2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가구주 변경 여부

| | 가구주 변경 여부 | | 가구주 변경 사유 | | | |
|---|---|---|---|---|---|---|
| | 변경됨 | 변경되지 않음 | 경제적 사유 | 사망 | 가구원 전출입 | 기타 |
| 단위(%) | 1.8 | 98.2 | 9.4 | 23.5 | 29.7 | 37.4 |

## 3. 표본가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 1) 가구원 수

본 조사에서 가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가구원은 가족과 함께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6개월 이상 같이 생활한 사람으로 정의했고, 다른 가구에 사는 기러기 아빠, 혈연관계가 없는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이 밖의 2019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함께 살게 된 가족은 간단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했으나 가구원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표 26] 가구원 수

| 단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2차년도 | 26.7 | 28.4 | 23.6 | 16.5 | 4.8 |
| 13차년도 | 27.9 | 29.8 | 21.6 | 16.1 | 4.5 |

### 2)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약간 더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가구원의 비중(21.8%)이 가장 높고 19세 이하 가구원(20.7%)이 그 다음으로 많이 조사됐다.

[표 27]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 단위(%) | 성별 | | 연령대 | | | | | |
|---|---|---|---|---|---|---|---|---|
| | 남자 | 여자 | 19세 이하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세 이상 |
| 12차년도 | 47.0 | 53.0 | 20.7 | 10.8 | 14.0 | 18.0 | 12.6 | 23.9 |
| 13차년도 | 46.6 | 53.4 | 20.7 | 11.6 | 14.4 | 16.6 | 15.0 | 21.8 |

### 3) 가구원의 학력

전체 가구원 중 대학(2년제 포함) 재학/졸업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8.1%, 고등학교 재학/졸업의

학력을 지닌 가구원이 28.8%로 나타났다.

[표 28] 가구원의 학력

| 단위(%) | 미취학 (안 받음 포함) | 초등학교 재학/졸업 | 중학교 재학/졸업 | 고등학교 재학/졸업 | 대학 재학/졸업 (2년/4년) | 대학원 재학/졸업 |
|---|---|---|---|---|---|---|
| 12차년도 | 8.8 | 14.8 | 10.2 | 28.2 | 34.8 | 3.0 |
| 13차년도 | 7.6 | 13.1 | 9.5 | 28.8 | 38.1 | 3.0 |

### 4)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가구원 중 무직/주부/학생 등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45.8%로 나타났으며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29.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9]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 단위(%) | 임금 근로자 (상용직) | 임금 근로자 (임시직) | 임금 근로자 (일용직)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무급 가족 종사자 | 무직/주부 /학생 (종사상 지위 해당 없음) |
|---|---|---|---|---|---|---|---|
| 12차년도 | 28.2 | 5.3 | 3.6 | 10.4 | 1.7 | 1.7 | 49.2 |
| 13차년도 | 29.2 | 5.9 | 3.8 | 11.1 | 2.2 | 2.0 | 45.8 |

### 5) 취업 가구원 수

가구 내에 취업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가 48.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취업 가구원 수가 2명인 가구가 33.0%로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수에는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표 30] 취업 가구원 수

| 단위(%)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이상 |
|---|---|---|---|---|---|
| 12차년도 | 17.3 | 46.1 | 32.0 | 3.9 | 0.6 |
| 13차년도 | 13.9 | 48.0 | 33.0 | 4.0 | 1.1 |

# 제 5 장 가구 조사표조사결과 요약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과 주택·자동차 현황, 연간 소득 및 소비 지출, 자산 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 지출 금액은 지출의 특성에 따라 월평균 금액과 연간 금액으로 구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 등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1. 표본가구의 경제적 상황

### 1) 가구 평균 연소득

재정패널 조사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을 각 가구원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토지/주택/상가 및 사무실/기타), 이자 및 배당 소득, 연금/보험 소득, 기타 소득(이전소득 포함), 양도소득 등으로 나누어 조사했다. 표본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70.1%,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29.2%였다.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n=8,792)로 나누어 계산했다. 이때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무응답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 조사 표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607.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근로소득이 평균 3,226.0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1,104.7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 소득 유형별 가구 평균 연소득

| 항목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근로소득 | | 70.1 | 4,607.5 | 3,226.0 |
| 사업소득 | | 29.2 | 3,789.9 | 1,104.7 |
| 부동산 임대소득 | 토지 | 0.4 | 3,623.3 | 13.6 |
| | 주택 | 4.8 | 1,405.6 | 67.8 |
| | 상가 및 사무실 | 1.6 | 1,970.4 | 32.0 |
| | 기타 | 0.1 | 851.2 | 0.6 |
| 이자 및 배당소득 | | 2.9 | 318.7 | 9.1 |
| 기타소득 | 타가구 이전소득 | 14.4 | 531.4 | 76.3 |
| | 노인요양특별급여 | 0.0 | 0.0 | 0.0 |

| 항목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 그 외 기타소득 | 3.5 | 1,060.7 | 37.5 |
| 양도소득/손실 | 양도소득 | 0.4 | 522.2 | 2.1 |
| | 양도손실 | 0.1 | 956.2 | 0.6 |
| 보험급여 | 사회보험 급여 | 19.9 | 902.0 | 179.5 |
| | 민간보험 급여 | 9.2 | 534.0 | 50.6 |
| 정부지원 | 정부지원 현금소득 | 21.4 | 415.5 | 87.3 |
| 퇴직관련 급여 | 특수직 퇴직연금 | 1.8 | 2,982.4 | 54.6 |
| | 특수직 퇴직일시금 | 0.1 | 4,272.3 | 2.7 |
| | 개인형 퇴직연금 | 0.1 | 1,034.4 | 0.6 |
| |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 0.9 | 2,472.5 | 22.2 |
| 연간 총소득* | | | | 4,965.2 |

* 가구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임.

### 2) 소득 가구원 수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1명인 경우는 50.5%, 2명인 경우는 41.0%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2] 소득 활동 가구원 수

| 구분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 | 0.8 | 50.5 | 41.0 | 6.1 | 1.5 | 0.2 |

### 3) 가구 자산 및 부채

(1) 금융자산

금융자산 중에는 금융기관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85.2%로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3,098.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구 금융자산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 85.2 | 3,639.8 | 3,098.2 |
| 펀드 가입 금액 | 3.0 | 4,480.2 | 133.0 |
| 채권 보유 금액 | 0.2 | 10,161.1 | 21.8 |
| 주식 보유 금액 | 7.0 | 4,585.5 | 320.6 |
|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 8.8 | 2,580.0 | 226.1 |
| 연금저축 | 7.5 | 2,647.3 | 196.0 |
| 빌려준 돈 | 1.0 | 2,897.6 | 28.7 |
| 기타 금융자산 | 0.7 | 8,710.7 | 59.3 |
| 금융자산 총액 | | | 4,077.7 |

(2) 부동산 자산

부동산 자산 중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주택의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표본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9,80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4] 가구 부동산자산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 52.0 | 32,984.6 | 69,006.6 |
|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 10.1 | 39,281.5 | 3,976.5 |
| 주택 외 보유 부동산(토지) | 8.9 | 22,286.9 | 1,972.4 |
| 주택 외 보유 부동산(건물) | 2.1 | 54,327.5 | 1,154.1 |
|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 39.8 | 11,289.0 | 4,495.5 |
|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 0.4 | 10,912.2 | 41.6 |
|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 4.8 | 4,823.3 | 228.7 |
| 부동산 자산 총액 | | | 29,804.2 |

(3)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고가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타 자산 보유 가구 수가 적어 전체 표본가구의 평균 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표본가구는 평균적으로 1,141.3만원의 기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표 35] 가구 기타 자산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자산(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보유 회원권(골프, 콘도 등) | 0.2 | 6,167.8 | 10.3 |
| 농기계, 가축 | 1.7 | 3,884.7 | 66.6 |
| 선박, 건설 중장비 | 0.4 | 8,231.0 | 36.3 |
| 귀금속 | 18.7 | 542.8 | 101.6 |
| 자동차 시가 | 60.0 | 1,418.0 | 849.6 |
| 기타 자산 | 0.7 | 10,774.1 | 77.4 |
| 기타 자산 총액 | | | 1,141.3 |

(4) 부채 및 연간 상환액

부채는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금융기관 대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3,936.6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36] 가구 부채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부채(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 3.0 | 8,919.7 | 273.0 |
| 학자금 대출 | 0.7 | 1,751.6 | 11.7 |
|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 15.4 | 11,817.7 | 1,819.2 |
| 금융기관 대출 | 9.8 | 7,461.0 | 731.4 |
| 신용카드 대출 | 1.5 | 1,969.2 | 30.5 |
| 전세금/보증금 | 9.7 | 14,458.7 | 1,032.3 |
| 기타 | 0.9 | 4,825.7 | 38.5 |
| 부채 총액 | | | 3,936.6 |

연간상환액은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상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 연평균 180만원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가구 부채 연간 상환액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상환액(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상환 | 3.1 | 563.5 | 17.0 |
| 학자금 대출 상환 | 0.7 | 161.7 | 1.0 |
|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상환 | 15.4 | 683.2 | 105.0 |
| 금융기관 대출 상환 | 9.8 | 533.7 | 52.1 |
| 신용카드 대출 상환 | 1.6 | 320.7 | 4.9 |
| 상환 총액 | | | 180.0 |

## 2. 가구 조사결과 요약

### 1) 가계 지출 현황

월간 지출 항목에서는 자동차 유류비,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가계지출 현황 : 월간 지출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자동차 유류비 | 월간 | 휘발유 비용 | 41.7 | 22.5 | 9.2 |
| | 월간 | 경유 비용 | 25.3 | 29.1 | 7.3 |
| | 월간 | LPG 비용 | 4.2 | 24.1 | 1.0 |
| | 월간 | CNG 비용 | 0.1 | 13.1 | 0.0 |
| | 월간 | 전기차 충전비용(자가) | 0.3 | 7.4 | 0.0 |
| | 월간 | 전기차 충전비용(영업) | 0.3 | 3.3 | 0.0 |
| 오토바이 유류비 | 월간 | 휘발유 비용 | 1.8 | 8.4 | 0.1 |
| 주거비 (공동주택) | 월간 | 전기료 | 61.0 | 4.1 | 2.5 |
| | 월간 | 수도료 | 60.7 | 2.1 | 1.3 |
| | 월간 | 도시가스요금 | 58.4 | 5.0 | 2.9 |
| | 월간 | 지역 난방비 | 11.9 | 5.6 | 0.7 |
| | 월간 | 난방용 유류비 | 0.6 | 6.5 | 0.0 |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 월간 | 연탄 | 0.0 | 7.2 | 0.0 |
| | 월간 | LPG | 0.7 | 5.0 | 0.0 |
| | 월간 | 공동부과금 | 58.8 | 6.6 | 3.9 |
| | 월간 | 기타 | 4.4 | 2.0 | 0.1 |
| 주거비 (단독주택) | 월간 | 전기료 | 38.3 | 4.2 | 1.6 |
| | 월간 | 수도료 | 36.5 | 1.8 | 0.7 |
| | 월간 | 도시가스요금 | 25.9 | 5.5 | 1.4 |
| | 월간 | 지역 난방비 | 1.1 | 6.8 | 0.1 |
| | 월간 | 난방용 유류비 | 9.7 | 6.6 | 0.6 |
| | 월간 | 연탄 | 0.5 | 5.5 | 0.0 |
| | 월간 | LPG | 11.0 | 2.1 | 0.2 |
| | 월간 | 기타 | 2.7 | 3.3 | 0.1 |
| 식료품비 | 월간 | 식료품 구입비 | 99.5 | 51.4 | 51.1 |
| | 월간 | 외식비 | 88.7 | 28.3 | 25.1 |
| 주류비 | 월간 | 맥주, 소주, 양주 | 40.7 | 4.8 | 2.0 |
| | 월간 | 와인 | 5.1 | 3.8 | 0.2 |
| | 월간 | 기타 주류 | 8.0 | 2.2 | 0.2 |
| 담배구입비 | 월간 | 담배구입비 | 20.0 | 11.8 | 2.3 |
| 교통비 | 월간 | 공공교통비 | 82.7 | 10.1 | 8.3 |
| | 월간 | 차량유지비 | 60.5 | 9.3 | 5.6 |
| | 월간 | 오토바이 유지비 | 1.3 | 3.6 | 0.0 |
| 통신비 | 월간 | 인터넷(복합상품) | 69.0 | 7.9 | 5.5 |
| | 월간 | 집전화 통화료 | 11.4 | 0.9 | 0.1 |
| | 월간 | 휴대폰 통화료 | 73.8 | 10.6 | 7.8 |
| | 월간 | 유료방송 시청료 | 28.5 | 1.4 | 0.4 |
| | 월간 | 기타 | 0.1 | 1.6 | 0.0 |

연간 지출 항목에서는 의류 구입비, 교육비, 보험료(민간/건강)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가계지출 현황 : 연간 지출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자동차 보험료 | 연간 | 보유 차량 보험료 | 62.3 | 94.2 | 58.6 |
| | 연간 | 미보유 차량 보험료 | 0.2 | 71.1 | 0.1 |
| 주택 수리비 | 연간 | 주택 수리비 | 4.9 | 474.5 | 23.2 |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문화생활비 | 연간 | 서적/음반 구입비 | 31.3 | 29.1 | 9.1 |
| | 연간 | 관람료 | 47.1 | 15.1 | 7.1 |
| | 연간 | 경륜/경정/경마 | 0.2 | 30.0 | 0.1 |
| | 연간 | 복권 구입 | 17.2 | 18.1 | 3.1 |
| | 연간 | 신문/잡지 구독 | 2.7 | 17.5 | 0.5 |
| | 연간 | 체육활동비 | 18.1 | 103.3 | 18.7 |
| | 연간 | 음악/문화 활동비 | 4.0 | 72.9 | 2.9 |
| | 연간 | 반려동물 지출비 | 8.2 | 79.8 | 6.5 |
| 가전제품구입비 | 연간 | TV | 5.3 | 165.9 | 8.7 |
| | 연간 | 냉장고, 김치냉장고 | 6.5 | 187.8 | 12.1 |
| | 연간 | 세탁기 | 5.0 | 125.1 | 6.2 |
| | 연간 | 에어컨 | 4.4 | 194.5 | 8.5 |
| | 연간 | 카메라 관련 제품 | 0.3 | 79.3 | 0.2 |
| | 연간 | 공기청정기 | 4.1 | 76.9 | 3.1 |
| | 연간 | 기타가전제품 | 9.6 | 70.6 | 6.7 |
| | 연간 | 가전제품 렌탈 | 18.5 | 46.0 | 8.5 |
| 통신장비구입비 | 연간 | 휴대폰 | 7.6 | 84.9 | 6.4 |
| | 연간 | 컴퓨터 | 3.8 | 127.8 | 4.9 |
| | 연간 | 기타 장비 | 0.9 | 45.8 | 0.4 |
| 가구 구입비 | 연간 | 가구 구입비 | 5.2 | 196.7 | 10.1 |
| | 연간 | 가구구입・인테리어비 | 2.5 | 432.9 | 10.8 |
| | 연간 | 악기 구입비 | 0.5 | 54.5 | 0.3 |
| | 연간 |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 3.7 | 93.3 | 3.4 |
| 의류 구입비 | 연간 | 의류 | 96.0 | 135.3 | 129.9 |
| | 연간 | 잡화 | 59.8 | 65.1 | 38.9 |
| | 연간 | 장신구 | 21.9 | 69.8 | 15.3 |
| 화장품비 | 연간 | 화장품 | 91.5 | 42.1 | 38.5 |
| | 연간 | 이・미용비 | 97.8 | 44.5 | 43.5 |
| 여행레저비 | 연간 | 여행 및 숙박료(국내) | 51.4 | 114.1 | 58.6 |
| | 연간 | 여행 및 숙박료(국외) | 16.9 | 427.0 | 72.0 |
| 교육비 | 연간 | 공교육비(등록금 등) | 17.3 | 435.8 | 75.2 |
| | 연간 | 공교육비(급식비) | 4.9 | 99.4 | 4.9 |
| | 연간 | 기타 공교육비 | 14.5 | 64.7 | 9.4 |
| | 연간 | 가구원 사교육비 | 22.5 | 726.1 | 163.5 |
| | 연간 | 비가구원 공교육비 | 0.4 | 1,383.2 | 6.0 |
| | 연간 | 비가구원 사교육비 | 0.3 | 629.8 | 1.7 |
| 보건의료비 | 연간 | 한약재 | 7.8 | 70.3 | 5.5 |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 연간 | 성형수술비 | 0.8 | 178.1 | 1.4 |
| | 연간 | 치과 진료비 | 30.1 | 138.2 | 41.5 |
| | 연간 | 입원치료비 | 11.7 | 252.6 | 29.4 |
| | 연간 | 외래진료비 | 90.1 | 39.9 | 36.0 |
| | 연간 | 약제비 | 91.0 | 28.9 | 26.3 |
| | 연간 | 건강검진비 | 15.2 | 36.1 | 5.5 |
| 혼인장례이사비 | 연간 | 혼인비용 | 1.0 | 2,075.9 | 20.5 |
| | 연간 | 혼인 가구 구입비 | 0.6 | 848.5 | 5.4 |
| | 연간 | 혼인 가전제품 구입비 | 0.7 | 1,099.7 | 7.2 |
| | 연간 | 혼인 주택구입비 | 0.2 | 17,611.4 | 40.6 |
| | 연간 | 혼인 전세금(보증금) | 0.3 | 9,402.2 | 32.3 |
| | 연간 | 장례비용 | 1.5 | 566.9 | 8.3 |
| | 연간 | 이사비용 | 5.2 | 182.4 | 9.5 |
| 가사도우미 서비스 | 연간 | 간병 도우미 | 0.1 | 490.4 | 0.4 |
| | 연간 | 가사 도우미 | 0.6 | 313.3 | 1.9 |
| | 연간 | 산후 및 육아 도우미 | 0.1 | 518.9 | 0.6 |
| 기부금 | 연간 | 기부금 | 28.9 | 166.5 | 48.1 |
| 민간보험료 | 연간 | 민간보험료 | 79.8 | 516.3 | 412.1 |
| 건강보험료 | 연간 | 건강보험료 | 78.9 | 196.0 | 154.7 |

### 2)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타가구로 이전 지출이 있는 가구가 17.8%였고, 반대로 타가구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경우는 16.7%로 조사됐다. 경조사 지출의 경우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77.9만원, 경조사 소득의 해당가구 평균 금액은 1,092.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0] 이전소득 및 이전지출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이전소득 지출 | 연간 | 타가구 이전지출 | 17.8 | 439.0 | 77.9 |
| | 연간 | 타가구 이전소득 | 16.7 | 544.9 | 90.8 |
| 경조사 | 연간 | 경조사 지출 | 81.7 | 77.5 | 63.3 |
| | 연간 | 경조사 소득 | 3.1 | 1,092.8 | 33.3 |

### 3) 상속 · 증여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적이 있는 가구는 0.3%, 가구원이 상속을 해준 적이 있는 가구는 0.1%로 나타났다. 증여의 경우 가구원이 증여한 가구는 0.4%,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가구는 0.2%로 상속, 증여 모두 해당 가구 수는 매우 적었다.

[표 41] 상속 및 증여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 (단위:만원) |
|---|---|---|---|---|---|
| 대분류 | 기준 | 소분류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상속 | 연간 | 타가구로부터 상속받은 금액 | 0.3 | 21,836.2 | 73.0 |
| | 연간 | 가구원이 상속해준 금액 | 0.1 | 6,606.1 | 3.6 |
| 증여 | 연간 | 가구원이 증여한 금액 | 0.4 | 26,843.8 | 111.0 |
| | 연간 | 타가구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 0.2 | 6,870.0 | 14.6 |

### 4) 정부 지원 현금 · 현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4.7%였으며, 연간 평균 수령액은 536.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지원금 중에서는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아동수당이 152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2] 정부 지원 현금 수급

| 항목 | |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 연간 | 4.7 | 536.6 | 19.1 |
| 자녀양육 지원금 | 출산지원금 | 연간 | 1.3 | 100.0 | 1.3 |
| | 아동수당 | 연간 | 9.5 | 152.0 | 14.2 |
| | 정부지원금 | 연간 | 8.7 | 315.5 | 26.6 |
| 기타현물지원 | | 연간 | 1.0 | 45.3 | 0.5 |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중 특별 현금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없었다.

### 5)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3.3%로 평균 108.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가구의 비율은 3.5%, 해당 가구의 평균 금액은 73.7만원이었다. 유가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전체의 1.3%로 수령 가구의 평균 금액은 약 101.8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3] 근로장려금, 유가보조금 및 기타 환급금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근로장려금 | 3.3 | 108.4 | 3.5 |
| 유가보조금 | 1.3 | 101.8 | 1.3 |
| 연말정산 환급금 | 25.3 | 73.7 | 18.5 |
| 종합소득세 환급금 | 3.5 | 69.8 | 2.4 |

### 6) 출산

출산 관련 의료기관 지출비가 발생한 가구는 1.3%로 평균 135.3만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비는 254.6만원, 산후도우미 이용비는 76.8만원 가량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출산 관련 지출비

| 항목 | 해당 가구 | | 전체 가구 평균 금액(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의료기관 지출비 | 1.3 | 135.3 | 1.8 |
|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출비 | 0.0 | 399.5 | 0.1 |
| 산후조리원 이용비 | 1.2 | 254.6 | 3.0 |
| 산후도우미 이용비 | 0.2 | 76.8 | 0.2 |

# 제 6 장 가구원 조사표조사결과 요약

## 1. 가구원 조사결과 요약

전체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인원은 전체 가구원의 63.8%에 해당하는 총 14,759명으로 나타났다.

### 1) 경제활동 상태 (2020년 5월 1일 기준)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81.2%로 나타났고, 그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0.0%,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0.0%로 나타났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18.8%로 나타났다.

[표 45] 소득활동 현황

(단위: %)

| 소득 활동함 | | | 소득활동 하지 않음 | | | 합계 |
|---|---|---|---|---|---|---|
| 81.2 | | | 18.8 | | | 100.0 |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합계 | 구직 | 비구직 | 합계 | - |
| 70.0 | 30.0 | 100.0 | 14.1 | 85.9 | 100.0 | - |

[표 46] 경제활동 상태 (base : 소득활동 가구원)

| 구분 | 세부항목 | 비율(%) |
|---|---|---|
| 종사상 지위 | 상용직 근로자 | 52.6 |
| | 임시직 근로자 | 11.1 |
| | 일용직 근로자 | 6.7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1.3 |
| | 고용원을 둔 사업주 | 4.7 |
| | 무급 가족 종사자 | 3.6 |
| 근무시간 형태 (base : 임금근로자) | 전일제 | 87.0 |
| | 시간제 | 13.0 |

## 2) 연간 소득

가구원 개인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조사 가구원의 평균 연간소득은 3,226.6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종류별로는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이 2,071.3만원, 사업소득자의 평균소득은 708.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가구원 연간 소득

| 항목 | | 소득 가구원 | | 조사 가구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평균 금액(만원) |
| 근로소득 | | 61.8 | 3354.5 | 2071.3 |
| 사업소득 | | 20.5 | 3461.0 | 708.8 |
| 부동산 임대소득 | 토지 | 0.3 | 3528.0 | 8.8 |
| | 주택 | 3.3 | 1340.9 | 43.5 |
| | 상가 및 사무실 | 1.1 | 1920.6 | 20.5 |
| | 기타 | 0.0 | 851.2 | 0.4 |
| 이자 및 배당소득 | | 1.9 | 309.6 | 5.8 |
| 기타소득 | 타가구 이전소득 | 9.7 | 503.5 | 48.9 |
| | 노인요양특별급여 | 0.0 | . | 0.0 |
| | 그 외 기타소득 | 2.3 | 1051.4 | 24.1 |
| 양도소득/손실 | 양도소득 | 0.3 | 490.8 | 1.4 |
| | 양도손실 | 0.0 | 956.2 | 0.4 |
| 부동산 임대사업자 | | 0.7 | 2483.6 | 15.0 |
| 보험급여/정부지원/퇴직급여 | 사회보험 급여 | 12.8 | 612.8 | 78.4 |
| | 민간보험 급여 | 6.1 | 295.8 | 17.8 |
| | 정부지원 현금소득 | 17.8 | 318.2 | 56.1 |
| | 특수직 퇴직연금 | 1.2 | 2896.1 | 35.0 |
| | 특수직 퇴직일시금 | 0.0 | 4272.3 | 1.8 |
| | 개인형 퇴직연금 | 0.0 | 1034.4 | 0.4 |
| |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 0.6 | 2454.8 | 14.2 |
| 연간 총소득* | | | | 3,226.6 |

* 연간 총소득은 양도 손실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

### 3) 연금/보험 납부 금액

소득 가구원 중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39.0%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납부 금액은 12.4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47.9%, 지역 가입자는 18.9%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고용보험료는 가구원 중 40.7%가 납부하였다. 민간보험에서는 보장보험 가입자가 7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8] 공적연금·민간보험 월평균/연간 납부 현황

| 구분 | 세부항목 | 납부 가구원 | | 조사 가구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평균 금액(만원) |
|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 39.0 | (월평균)12.4 | 4.8 |
| | 지역 가입자 | 12.1 | (월평균)14.0 | 1.7 |
| |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 0.6 | (월평균)12.7 | 0.1 |
| 특수직역 연금 | | 3.9 | (월평균)32.4 | 1.3 |
| 건강보험료 | 사업장 가입자 | 47.9 | 137.5 | 65.4 |
| | 지역 가입자 | 18.9 | 162.3 | 30.7 |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 | 40.7 | 26.6 | 10.7 |
| 민간보험 | 퇴직연금 | 1.7 | 293.2 | 5.1 |
| | 연금저축 | 4.1 | 315.5 | 13.1 |
| | 연금보험 | 4.3 | 343.7 | 14.8 |
| | 보장보험 | 72.4 | 255.1 | 184.7 |
| | 저축보험 | 2.1 | 423.4 | 8.9 |
| | 자동차보험 | 43.5 | 82.9 | 36.0 |

###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신용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69.9%이고 보유 가구원의 국내 평균 사용금액은 1,253.9만원으로 나타났다. 직불카드를 보유한 가구원의 비율은 44.6%, 국내 평균 사용 금액은 523.5만원이었다. 연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111.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현황

| 구분 | 세부항목 | 보유 가구원 | | 조사 가구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평균 금액(만원) |
| 신용카드 | 국내사용액 | 69.9 | 1253.9 | 871.7 |
| | 해외사용액 | | 253.1 | 4.1 |
| | 전통시장 사용액 | | 73.3 | 20.5 |
| | 대중교통 사용액 | | 52.8 | 20.7 |
| 직불카드 | 국내사용액 | 44.6 | 523.5 | 222.6 |
| | 해외사용액 | | 142.7 | 0.4 |
| | 전통시장 사용액 | | 59.2 | 5.7 |
| | 대중교통 사용액 | | 41.7 | 4.3 |
| 현금영수증 | 사용액 | - | 275.6 | 111.4 |

### 5) 소득 공제 현황

#### (1) 소득세 납부 유형

소득 가구원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의 비율은 42.9%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13.1%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가구원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았다.

[표 50] 소득세 납부 유형

| 구분 |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응답자 |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 응답자 |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동시 신고 | 해당 없음 |
|---|---|---|---|---|
| 비율(%) | 42.9 | 13.1 | 0.5 | 43.5 |

#### (2) 근로소득 연말정산 가구원의 공제내역과 결정세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은 가구원의 비율이 90.1%였고,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173만원이었다. 보험료 공제를 받은 비율은 88.8%였고,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169.2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은 비율은 66.3%였으며,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248.1만원이었다.

[표 51]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구분 | 세부항목 | 공제 가구원 | | 연말정산 가구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평균 금액(만원) |
| 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90.1 | 173.0 | 155.8 |
| | 보험료 | 88.8 | 169.2 | 150.0 |
| | 보장성 보험료 | 75.9 | 11.4 | 8.3 |
| 의료비 | 의료비 | 26 | 46.7 | 10.5 |
| 교육비 | 교육비 | 19.4 | 46.1 | 7.6 |
| 주택자금 | 주택자금 | 10.3 | 283 | 29.0 |
| | 주택마련저축 | 6.9 | 57 | 3.9 |
| | 월세 | 2.2 | 29.2 | 0.7 |
| 기부금 | 기부금 소득공제 | 0.3 | 142.9 | 0.4 |
| | 기부금 세액공제 | 20.4 | 21.6 | 4.3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0.6 | 52.4 | 0.3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 | 28 | 0.0 |
| | 퇴직연금 | 4.5 | 37.1 | 1.7 |
| | 연금저축 | 0.1 | 30.4 | 2.4 |
| 투자조합출자 등 | 투자조합출자 등 | 0.1 | 174 | 0.1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66.3 | 248.1 | 158.1 |
| 우리사주조합출자 | 우리사주조합출자 | 0.2 | 387.6 | 0.9 |
| 기타 | 기타 소득공제 | 0.7 | 111 | 0.8 |
| | 기타 세액공제 | 0.8 | 78.4 | 0.5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100 | 149.3 | 149.0 |

※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가구원 중 환급을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55.7%였고, 추가 납부를 한 가구원의 비율은 12.9%였다.

[표 52]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 구분 | 해당 가구원 | | 연말정산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환급 받은 금액 | 55.7 | 60.5 | 33.7 |
| 추가 납부한 금액 | 12.9 | 53.2 | 6.9 |

(3) 종합소득공제현황

종합소득공제를 받은 가구원 중 56.1%가 공적연금 보험료를 공제 받았으며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184.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준공제를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69.9%였고, 공제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7.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53] 종합소득신고 공제 현황

| 구분 | 세부항목 | 공제 가구원 | |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보험료 | 공적연금 보험료 | 56.1 | 184.7 | 103.5 |
| 기부금 | 기부금 소득공제 | 0.1 | 40.1 | 0.0 |
| | 기부금 세액공제 | 3.6 | 38.3 | 1.3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0.2 | 44.1 | 0.1 |
| 연금계좌 | 과학기술인공제 | 0 | - | 0.0 |
| | 퇴직연금 | 0.1 | 31.3 | 0.2 |
| | 연금저축 | 2.9 | 28.7 | 0.7 |
| 투자조합출자 등 | 투자조합출자 등 | 0.1 | 1500.0 | 1.1 |
| 표준공제 | 표준공제 | 69.9 | 7.1 | 5.0 |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 | 0.1 | 272.1 | 0.2 |
| 기타 | 기타 소득공제 | 4.8 | 261.4 | 12.5 |
| | 기타 세액공제 | 8.2 | 58.7 | 4.8 |
| 성실사업자대상 공제 항목 | 의료비 | 0.2 | 48.3 | 0.1 |
| | 교육비 | 0.5 | 71.6 | 0.4 |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100 | 291.7 | 142.0 |

※ 해당자 비율과 전체 평균금액은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n=2,071)을 기준으로 산출. 공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결정세액 계산에서는 세금이 0원인 케이스를 포함시켜 계산함.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환급 받은 가구원의 비율은 19.9%였고 해당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59.9만원으로 나타났고, 추가 납부한 가구원의 비율은 17.5%로 조사되었고, 해당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124.4만원이었다.

[표 54]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 및 추가 납부

| 구분 | 해당 가구원 | | 종합소득 신고 가구원 평균 금액(만원) |
|---|---|---|---|
| | 비율(%) | 평균 금액(만원) | |
| 환급 받은 금액 | 19.9 | 59.9 | 11.9 |
| 추가 납부한 금액 | 17.5 | 124.4 | 21.8 |

## 2.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 요약

전체 가구원 중 소득이 있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가구원 의식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전체 가구원의 61.4%에 해당하는 총 14,204명으로 나타났다.

### 1) 사회 · 정치에 대한 인식

#### (1)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족과 친구는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의 경우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55] 다양한 유형의 사람에 대한 신뢰도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정치인(국회의원 등)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5.3 |
| | 보통이다 | 22.9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46.7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25.0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법조인 (판사, 검사 등 포함)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6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3.1 |
| | 보통이다 | 37.0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4.5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4.8 |
| 공무원 (판사, 검사, 세무공무원 등 제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1.7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4.2 |
| | 보통이다 | 44.9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21.9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7.4 |
| 교수 등 전문가 집단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1.6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3.7 |
| | 보통이다 | 47.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21.4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6.1 |
| 언론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8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4.1 |
| | 보통이다 | 40.1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4.1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0.9 |
| 기업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1.9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21.6 |
| | 보통이다 | 44.3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24.8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7.4 |
| 가족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78.3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18.4 |
| | 보통이다 | 2.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0.7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0.4 |
| 친구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30.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58.6 |
| | 보통이다 | 9.5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1.5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0.2 |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가족, 친구 제외)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3.7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35.4 |
| | 보통이다 | 48.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11.4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3 |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처음 만난 사람 | 매우 신뢰할 수 있다 | 0.2 |
| |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 6.3 |
| | 보통이다 | 40.4 |
| |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 | 38.9 |
| | 전혀 신뢰할 수 없다 | 14.3 |

(2)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정치에 대한 관심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투표에 적극 참여한다 39.6%,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6.9%로 나와 정치적인 관심도는 보통일지라도 투표에는 참여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6] 정치적 성향, 정치에 대한 관심, 투표참여 정도

| 구 분 | 항목 | 비율(%) |
|---|---|---|
| 정치적 성향 | 매우 진보적이다 | 2.2 |
| | 다소 진보적이다 | 24.9 |
| | 중도적이다 | 43.2 |
| | 다소 보수적이다 | 23.9 |
| | 매우 보수적이다 | 5.8 |
| 정치에 대한 관심 | 매우 많다 | 3.7 |
| | 다소 많다 | 25.3 |
| | 보통이다 | 48.3 |
| | 다소 적다 | 16.8 |
| | 매우 적다 | 5.9 |
| 투표참여 정도 | 적극 참여한다 | 39.6 |
| |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46.9 |
| | 잘 참여하지 않는다 | 12.3 |
| |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1.1 |
| | 투표권이 없다(만18세 이하) | 0.0 |

## 2) 조세 · 복지제도

### (1) 본인 세부담 평가

본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 나왔으며,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조사되었다. 정부의 혜택이 낮은 수준(약간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5%로 그 뒤를 이어 높게 조사되었다.

[표 57] 본인 세부담 평가

| 구 분 | 항목 | 비율(%) |
|---|---|---|
| 본인 경제적 능력 대비 세부담 평가 | 매우 많이 납부한다 | 6.2 |
| | 약간 많이 납부한다 | 35.8 |
| | 적절하게 납부한다 | 52.5 |
| | 약간 적게 납부한다 | 4.3 |
| | 매우 적게 납부한다 | 1.1 |
|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 매우 높은 수준 | 0.6 |
| | 약간 높은 수준 | 12.1 |
| | 적당한 수준 | 46.8 |
| | 약간 낮은 수준 | 32.4 |
| | 매우 낮은 수준 | 8.2 |
|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부담 평가 | 매우 높은 수준 | 5.9 |
| | 약간 높은 수준 | 35.3 |
| | 적당한 수준 | 55.6 |
| | 약간 낮은 수준 | 2.6 |
| | 매우 낮은 수준 | 0.6 |

### (2) 근로소득세 부담 평가

연간 세전소득에 해당하는 적정 세율에 대한 평가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경우, 0%가 적정 세율이라는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고, 세전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1~10%가 적정 세율이라는 비율이 64.0%로 가장 높았다.

[표 58] 총 세전소득 대비 적정 소득세 비율

| 세전소득 | 적정 세율(%) | | | | | | | | |
|---|---|---|---|---|---|---|---|---|---|
| | 0% | 1~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60% | 60% 초과 | 모름 |
| 1,000만원 | 67.9 | 29.7 | 2.1 | 0.2 | 0.1 | 0.0 | 0.0 | 0.0 | 0.0 |
| 3,000만원 | 40.3 | 54.2 | 4.9 | 0.5 | 0.0 | 0.0 | 0.0 | 0.0 | 0.0 |
| 5,000만원 | 16.2 | 64.0 | 18.0 | 1.6 | 0.2 | 0.0 | 0.0 | 0.0 | 0.0 |
| 7,000만원 | 6.9 | 48.8 | 34.9 | 8.5 | 0.8 | 0.1 | 0.0 | 0.0 | 0.0 |
| 1억원 | 2.3 | 23.1 | 47.8 | 20.2 | 5.6 | 0.8 | 0.1 | 0.0 | 0.0 |
| 1억 5,000만원 | 0.8 | 10.8 | 43.4 | 28.0 | 12.1 | 4.0 | 0.7 | 0.2 | 0.0 |
| 3억원 | 0.2 | 5.9 | 26.5 | 38.2 | 16.3 | 8.4 | 3.4 | 1.1 | 0.0 |
| 5억원 | 0.0 | 2.6 | 13.6 | 34.5 | 26.4 | 12.3 | 6.5 | 4.1 | 0.0 |
| 10억원 | 0.0 | 1.4 | 6.2 | 21.6 | 31.4 | 19.2 | 10.7 | 9.6 | 0.0 |

(3) 소득 격차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 84.4%(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7.4%로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9.1%(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정부 정책이 대체로 중요)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소득격차

| 구 분 | 항목 | | 비율(%) |
|---|---|---|---|
|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 매우 크다 | | 30.8 |
| | 약간 크다 | | 53.6 |
| | 보통이다 | | 14.8 |
| | 별로 크지 않다 | | 0.7 |
| | 전혀 크지 않다 | | 0.0 |
|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 매우 커질 것이다 | | 38.8 |
| | 약간 커질 것이다 | | 48.6 |
| | 보통이다 | | 11.7 |
| | 약간 작아질 것이다 | | 0.8 |
| | 매우 작아질 것이다 | | 0.0 |
|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 정부 정책 | ① | 24.0 |
| | | ② | 45.0 |

| | | | |
|---|---|---|---|
| | 개인 노력 | ③ | 24.6 |
| | | ④ | 5.5 |
| | | ⑤ | 0.8 |

(4)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복지 축소 시 실업(22.4%)을 가장 우선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부문이라고 응답한 반면, 확대 시에는 저소득층 소득지원(27.2%)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60]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 구 분 | 항목 | 비율(%) |
|---|---|---|
| 현재 복지수준 적정성 평가 |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11.5 |
| | 적당하다 | 69.7 |
| |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18.8 |
| 복지 축소 시 우선적 축소 부문 (1순위 응답 기준) | 저소득층 소득지원 | 20.9 |
| | 노인층 소득지원 | 19.9 |
| | 장애인 지원 | 5.2 |
| | 보건 | 3.6 |
| | 가족·아동 | 7.6 |
| | 일자리 | 17.6 |
| | 실업 | 22.4 |
| | 주거 | 2.6 |
| | 기타/모름 | 0.4 |
| 복지 확대 시 우선적 확대 부문 (1순위 응답 기준) | 저소득층 소득지원 | 27.2 |
| | 노인층 소득지원 | 21.4 |
| | 장애인 지원 | 7.9 |
| | 보건 | 6.6 |
| | 가족·아동 | 13.6 |
| | 일자리 | 11.6 |
| | 실업 | 3.7 |
| | 주거 | 7.8 |
| | 기타 | 0.2 |

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에서는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해 증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증세 시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본인의 세금 추가 부

담에 있어서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61.8%로 조사되었다.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 복지 및 증세에 대한 태도

| 구 분 | 항목 | 비율(%) |
|---|---|---|
| 복지 확대 시 재원 조달 방안 (1순위 응답 기준) |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주요세목 세율조정을 통한 증세 | 42.5 |
| |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운영 | 19.8 |
| | 다른 부문 재정지출 축소 추진 | 17.9 |
|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 13.1 |
| | 국가부채 통한 충당 | 1.3 |
| | 모르겠다 | 5.0 |
| | 기타 | 0.3 |
| 증세 시 바람직한 방법 (1순위 응답 기준) | 대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 49.3 |
| | 모든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 17.1 |
| | 고소득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27.9 |
| | 중소득층 이상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2.4 |
| | 모든 소득계층의 개인소득세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 | 1.0 |
| |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 2.2 |
| | 기타 | 0.1 |
| 증세 불가피 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 61.8 |
| |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33.9 |
| | 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3.9 |
| |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 0.4 |
| |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 0.1 |
| 바람직한 복지 정책 방향 |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 | 26.5 |
| |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되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 제공 | 55.9 |
|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 | 17.6 |

(5) 세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세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중부담-중복지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 세 부담과 복지 수준 평가

| 구분 |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 바람직한 수준(%) |
|---|---|---|
| 저부담 - 고복지 | 3.8 | 8.3 |
| 중부담 - 고복지 | 10.5 | 26.6 |
| 고부담 - 고복지 | 2.9 | 5.5 |
| 저부담 - 중복지 | 10.9 | 11.9 |
| 중부담 - 중복지 | 41.2 | 41.2 |
| 고부담 - 중복지 | 8.1 | 2.0 |
| 저부담 - 저복지 | 5.8 | 2.4 |
| 중부담 - 저복지 | 13.4 | 1.8 |
| 고부담 - 저복지 | 3.4 | 0.4 |

### 3) 위험회피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지 묻는 질문에서 1억원을 모두 예금상품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가장 높았고, 5천만원씩 예금상품과 펀드상품에 나눠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 위험회피

| A. 예금상품 | B. 펀드상품 | 비율(%) |
|---|---|---|
| 0원 | 1억 원 | 3.3 |
| 1천만 원 | 9천만 원 | 2.5 |
| 2천만 원 | 8천만 원 | 4.2 |
| 3천만 원 | 7천만 원 | 6.2 |
| 4천만 원 | 6천만 원 | 6.8 |
| 5천만 원 | 5천만 원 | 14.2 |
| 6천만 원 | 4천만 원 | 6.7 |
| 7천만 원 | 3천만 원 | 8.8 |
| 8천만 원 | 2천만 원 | 7.8 |
| 9천만 원 | 1천만 원 | 4.5 |
| 1억 원 | 0원 | 34.9 |

### 4) 시간 선호

한 달 뒤 토큰 1개의 가치가 101,000원이 될 때, 한 달 뒤 토큰을 교환하겠다는 개수가 20개 중 평균 11.0개로 나타났고, 토큰 1개의 가치가 102,000원이 될 때, 한 달 뒤 교환하겠다는 개수는 평균 14.1개로 나타났다.

[표 64] 시간 선호

| 내일 교환 시 토큰 1개 가치 | 한 달 뒤 교환 시 토큰 1개 가치 | 내일 교환 개수 (평균, 개) | 한 달 뒤 교환 개수 (평균, 개) |
|---|---|---|---|
| 100,000원 | 101,000원 | 9.0 | 11.0 |
| 100,000원 | 101,250원 | 8.7 | 11.3 |
| 100,000원 | 101,500원 | 7.7 | 12.3 |
| 100,000원 | 101,750원 | 6.7 | 13.3 |
| 100,000원 | 102,000원 | 5.9 | 14.1 |

### 5) 공공재 공급 기여

개인적으로 100만원에 수익을 벌었을 때, 지역 공공재 공급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은 11.4만원으로 나타났고, 지역 지원금 10억 중 지역 사회 개발에 사용할 금액은 평균 51,986.6만원, 지역 주민에게 배부할 금액은 평균 49,223.1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5] 공공재 공급 기여

| 구분 | 항목 | 금액 (평균, 만원) |
|---|---|---|
| 수익 100만원 중 기부 | 공공재 공급 기부 금액 | 11.4 |
| 지역 지원금 10억원 배분 | 지역 사회 개발 금액 | 51,986.6 |
| | 지역 주민 배부 금액 | 49,223.1 |

### 6) 건강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한 편(매우 건강+대체로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1%로 조사되었으며, 건강하지 못한 편(매우 건강하지 못함+대체로 건강하지 못함)이라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표 66] 주관적 건강상태

| 구분 | 항목 | 비율(%) |
|---|---|---|
| 주관적 건강상태 | 매우 건강한 편이다 | 14.1 |
| | 대체로 건강한 편이다 | 54.0 |
| | 보통이다 | 21.2 |
| |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8.9 |
| |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1.9 |